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 세무 및 재무 Guidebook

2024년 4월



인사말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훈 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매우 빠르게 뉴노멀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 드라마로 여러 전통 산업의 성장세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고령화 및 기술 개발 등에 힘입어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창의적인 R&D 활동을 통해 제약바이오 부문의 해외 수출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 및 진단기기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간의 사회적, 법률적, 언어적 차이 등으로 IFRS의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IFRS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각종 무료세미나 개최 및 기업체 교육 등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IFRS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IFRS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난 2020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IFRS 적용이슈와 해결방안”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최근의 IFRS 제개정 사항 및 감독지침, Deal 및 Tax 이슈를 포괄한 2024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Contents

1. 연구개발과 무형자산	6
1.1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7
1.2 유사한 시장에서 시판승인을 얻은 경우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 시나리오 ①	8
1.3 유사한 시장에서 시판승인을 얻은 경우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 시나리오 ②	9
1.4 자본화할 수 있는 개발원가의 예	10
1.5 자본화할 수 있는 개발원가 – 사례	11
1.6 제네릭 개발원가의 자본화	13
1.7 바이오시밀러 개발원가의 자본화	14
1.8 개발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	15
1.9 개발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개발지출의 회계처리	16
1.10 다른 적응증에 대한 개발	17
1.11 성능 비교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18
1.12 소규모 환자 그룹을 치료할 약품의 개발원가	19
1.13 특허 보호비용	20
1.14 우선심사권	21
1.15 무형자산의 교환	22
1.16 무형자산의 일부 처분	23
1.17 라이선스 아웃 관련 무형자산의 제거	24
1.18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특허권	26
1.19 기술의 라이선스 취득	27
1.20 개발 중인 약품의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28
1.21 라이선스 이용자가 개발작업을 진행하는 개발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취득	29
1.22 라이선스 제공자가 개발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개발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취득	31
1.23 연구활동 수행에 대한 계약금	32
1.24 개발 후보물질 도출 연구의 회계처리	33
1.25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 개발	34
1.26 지적재산의 공동개발	35
1.27 연구에 대한 원가가산 보상 계약	36
1.28 무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37
1.29 상각 개시시점 ①	38
1.30 상각 개시시점 ②	39
1.31 개발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40
1.32 무형자산의 상각	41
1.3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42
1.34 손상징후 – 무형자산	43
1.35 손상징후 – 유형자산	44
1.36 개발이 종단된 취득한 물질	45

1.37	병용 요법에 사용된 물질	46
1.38	시판승인 전 IPR&D의 손상	47
1.39	시판승인 후 개발비의 손상	48
1.40	단일 시장 손상 회계처리	49
1.41	손상차손의 환입(원가모형)	50
1.42	손상검사와 내용연수	51
2	제조와 공급과정	52
2.1	개발 중인 시험생산배치(Trial batch)의 회계처리	53
2.2	유효성 검사 생산 배치(Validation batch)의 회계처리	54
2.3	개발용 자재 및 소모품	55
2.4	재고자산으로서 원재료의 인식	57
2.5	시판승인 전 생산된 출시되지 않은 재고자산	58
2.6	승인신청 후 개발 중인 의약품 재고의 회계처리	59
2.7	개발 중인 제네릭 약품 재고의 회계처리	60
2.8	의약품 제조 시 백신 배양에 대한 회계처리	61
2.9	손상징후 – 재고자산	62
3	R&D를 위한 자금조달	63
3.1	R&D 자금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의 자본화	64
3.2	임상 3상 자금조달	65
3.3	R&D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및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대여금 및 보조금	67
3.4	임상 3상을 위해 신설 회사로 자금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	68
4	사업결합 & 자산취득	70
4.1	단일 물질의 취득	71
4.2	물질의 취득과 과학자들의 이전	72
4.3	취득한 IPR&D의 회계처리	73
4.4	바이오기업의 취득 – 단일 IPR&D 프로젝트	75
4.5	바이오기업의 취득 – 복수의 IPR&D 프로젝트	76
4.6	취득 – 조건부 대가에 대한 매수자 회계처리	77
4.7	처분 – 조건부 대가에 대한 매도자 회계처리	78
5	수익 – IFRS 15	79
5.1	계약기간	80
5.2	계약변경	81
5.3	협업 약정 회계처리 시 적용범위 고려사항 ①	82
5.4	협업 약정 회계처리 시 적용범위 고려사항 ②	83

5.5	개발 후 단계의 의무	84
5.6	수행의무 구분가능성에 대한 평가(라이선스 및 제조)	85
5.7	수행의무 구분가능성에 대한 평가(독점판매권 및 제조)	86
5.8	원가보상 회계처리	87
5.9	조건부 지급이 있는 경우의 변동대가 추정	88
5.10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된 고객에 대한 수익인식	89
5.11	대량 구매 시 가격 할인	90
5.12	결과 중심의 성과에 따른 지급 약정	92
5.13	제조계약시 약정수율 미달 회계처리	93
5.14	제조 계약	94
5.15	개발 서비스 계약	95
5.16	계약금 및 조건부 지급을 포함한 개발용역	96
5.17	무형자산 매각으로 수령한 상장주식	97
5.18	라이선스 계약에서 수령한 거래 대가	98
5.19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추가 적용 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100
5.20	최초 매출발생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	102
5.21	지배적인 지적재산 라이선스	103
5.22	라이선스 이용자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의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	104
5.23	라이선스 제공자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의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	106
5.24	신규장비 판매시 할인옵션	109
5.25	의료장비 제조업체 품질보증 – 연장보증 구매옵션	111
5.26	의료장비 제조업체 품질보증비용 – 제조사 청구	112
5.27	의료장비 판매시 설치 의무 – 구별되는 수행의무	114
5.28	장기이행보증금의 수익인식 – 환불불가조건	115
5.29	장기이행보증금의 수익인식 – 환불조건	116
5.30	약가인하에 대한 소급반영 회계처리	118
5.31	CSO 지급수수료 회계처리	119
5.32	반품에 대한 환불부채 회계처리	120
6	표시 및 공시사항	121
6.1	자산화 개발원가 표시	122
6.2	판촉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123
6.3	광고비와 판촉비	124
6.4	무상샘플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125
6.5	공동 판촉비(Co-promotion royalties)의 분류	126
6.6	내부 연구개발부서의 부문별 보고	127
6.7	연구개발용역의 부문 보고	128
6.8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 시 연구개발의 공시사항	129

7 Lease – IFRS 16	130
7.1 대체권	131
7.2 약정 내 구성 요소의 식별: 실험실 시설	132
7.3 리스분류와 최초 및 후속 측정	133
7.4 독점공급계약 – 사용통제권	134
7.5 독점공급계약 – 자산의 식별	135
7.6 독점공급계약 –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	136
7.7 공급계약에 포함된 생산 라인 내재리스 – 고정된 최소 대가	137
7.8 공급계약에 포함된 생산 라인 내재리스 – 변동대가	138
8 제약바이오 기업의 Deal 고려사항	139
8.1 제약바이오 산업의 M&A	140
8.2 제약바이오 산업 스타트업의 펀딩	146
8.3 제약바이오 산업의 IPO	149
8.4 제약바이오 산업의 Valuation	155
9 제약바이오 기업의 Tax 고려사항	160
9.1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61
9.2 M&A시 주주의 세무사항	168
9.3 개발비 세무조정 관련 유의사항	172
10 Contacts	176

1

연구개발과 무형자산



1.1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Background

제약회사가 에이즈 백신을 개발 중이며 임상 1,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 백신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경영진은 여전히 시판승인을 얻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며, 백신 제조나 마케팅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현 상태에서 경영진은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해야 하는가?



Solution

아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자본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은 후속개발원가를 자본화하면 안된다.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위한 명확한 개시시점은 없다. 경영진은 각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사실에 근거하여 자본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판승인 여부는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강한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산의 완성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입증되는 가장 명확한 시점이며[IAS 38 문단 57(a)], 이것은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기준이다. 어떤 경우에는 시판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도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시나리오에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및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 및 안내자료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과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예시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 및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결론과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2 유사한 시장에서 시판승인을 얻은 경우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 시나리오 ①



Background

제약회사가 아가라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흐흡기 치료 약물에 대한 시판승인을 얻었다. 이 회사는 벨란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절차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진은 이 제2의 시장에서 시판승인을 얻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인정조약 및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벨란 당국은 아가라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한 승인을 거의 거부하지 않아 왔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a.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b.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c.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d.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e.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f.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가?



Solution

회사가 개발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추가적인 개발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다. 회사는 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판승인에 대한 장벽이 낮아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1.3 유사한 시장에서 시판승인을 얻은 경우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 – 시나리오 ②



Background

제약회사가 스파르텍이라는 나라에서 에이즈 신약에 대한 시판승인을 얻었으며, 또 다른 나라인 오세아나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험에 따르면 오세아나 정부의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추가 임상시험에 필요할 것이다. 스파르텍에서 승인된 일부 약품은 추가 임상시험 후에도 오세아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a.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b.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c.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d.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e.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f.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가?



Solution

회사는 추가 개발비를 자본화해서는 안된다. 다른 시장에서 등록하려면 상당한 추가 임상시험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 한 시장에서의 승인이 다른 시장에서의 승인을 반드시 예측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4 자본화할 수 있는 개발원가의 예



Background

실험실에서 사스(SARS)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고 있다. 시판승인을 얻었으므로 경영진은 IAS 38 문단 57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특정 개발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경영진은 어떤 원가를 자본화 대상에 포함할지 확신이 없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다[IAS 38 문단 8].

제약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지출이 개발원가로 간주될 수 있는가?



Solution

개발비의 자본화 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할 때,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개발원가를 고려해야 한다[IAS 38 문단 57]:

- 내부 전담 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조사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직원의 급여;
- 법적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수수료, 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와 같은 직접 귀속비용;
- 자산의 개발에 직접 관련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의 배분;
- 규제기관에 제출 관련 발생하는 법적 비용;
- 생산 전의 시제품과 모델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그리고
- 상업적 생산을 위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및 직접 관련되는 임금과 급여

1.5 자본화할 수 있는 개발원가 – 사례



Background

제약회사가 아가라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흐흡기 약물에 대한 시판 승인을 얻었다. 이 회사는 벨란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개발 절차는 벨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해 필수적이다. 추가 개발에는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운송밸리데이션*이 포함되며, 동 운송밸리데이션을 위한 물류비가 발생한다.

상호인정조약 및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벨란 당국에서의 해당 약물의 최종 판매승인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승인 시 벨란에서의 시장 확대로 회사의 매출은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송밸리데이션: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밸리데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계획한 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필수절차



Relevant guidance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IAS 38 문단 67].

-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 (3)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이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의 처리가 개정 전 IAS 38에서는 모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연구, 개발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나 개발단계에서의 지출과 관련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러한 규정은 외견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후속지출을 다루는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나 완성 후의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다음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IAS 38 문단 BC 86].

- (1) 그 지출은 최초에 평가된 성과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 (2) 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자산에 귀속될 수 있다.
-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후속지출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될 것이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IAS 38 문단 57]:

- g.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h.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j.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k.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그리고
- l.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다[IAS 38 문단 8].

이미 판매하고 있는 약물을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한 추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밸리데이션 지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Solution

특정 국가에서 판매 중이더라도 해당 지출이 또 다른 국가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투입된 것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특정 자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하다[IAS 38 문단 BC86]. 따라서, 운송밸리데이션을 위해 발생한 물류비 등이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의 일부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특정 자산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IAS 38 문단 57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자산화 가능할 것이다.

1.6 제네릭 개발원가의 자본화



Background

제약회사가 다른 회사가 수년간 시장에서 판매한 진통제의 제네릭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승인된 제품의 제네릭 버전이며 화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자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회사의 자문 변호사는 상업적 시판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유의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해당 시나리오는 IAS 38 문단 57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 가능하다고 가정함).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a.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b.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c.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d.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e.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f.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 시점에서 경영진은 개발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가?



Solution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위한 명확한 개시시점은 없다. 경영진은 각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사실에 근거하여 자본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판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영진은 내부개발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다[IAS 38 문단 57].

다만, 제품의 상업적 성공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7 바이오시밀러 개발원가의 자본화



Background

제약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 중이며, FDA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존에 FDA가 승인한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 정보와 상세한 연구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DA는 제품의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을 검토하였고 제조사에게 비교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경영진은 임상시험에서 유의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 시점에서 경영진은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해야 하는가?



Solution

아니다. 해당 제품이 자본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은 추가적인 개발비용을 자본화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 생물학적 제품에 대한 약식 절차가 바이오시밀러 또는 호환성 있는 제품에 대해 낮은 승인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는 여전히 제품이 참조대상제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임을 입증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 임상 1상 및 이후 임상 3상을 완료해야만 한다.

내부개발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명확한 자본화 가능 시점은 없다. 경영진은 각 개발제품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시판승인은 상기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강력한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산을 완성하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입증되는 가장 명확한 시점이며 [IAS 38 문단 57(a)], 이것은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및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 및 안내자료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과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예시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 및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결론과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8 개발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



Background

제약회사인 매직큐어는 새로운 흡입기 치료제에 대한 시판승인을 얻었다. 매직큐어는 시판승인을 받았을 때 개발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직큐어는 현재 영업인력 교육 및 시장조사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개발원가는 IAS 38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

자본화하는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IAS 38 문단 66].

판매비, 관리비, 일반간접비, 비효율로 인한 손실, 교육훈련비는 무형자산의 일부로 자본화할 수 없다[IAS 38 문단 67].

매직큐어의 경영진은 이러한 비용을 자본화 해야 하는가?



Solution

매직큐어는 영업인력의 교육이나 시장조사 수행과 같은 판매 및 마케팅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출은 자산 창출, 생산 또는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 직원 교육, 판매 및 관리에 대한 지출은 자본화되지 않아야 한다[IAS 38 문단 67].

1.9 개발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개발지출의 회계처리



Background

제약회사인 델타는 백신공급장치에 대하여 6가지 자본화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장치의 개발에는 새로운 시판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본화되는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IAS 38 문단 66].

델타의 경영진은 이러한 비용을 자본화해야 하는가?



Solution

새로운 기능은 새로운 시판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델타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지출을 자본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규 시판승인 요건은 수정된 기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및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 및 안내자료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과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가장의 시나리오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예시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 및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결론과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10 다른 적응증에 대한 개발



Background

제약회사인 아츠파마는 진통제로 사용이 승인된 약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는 그 약이 암 치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츠파마는 이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을 시작했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한다[IAS 38 문단 57]: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그리고
-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경영진은 다른 적응증과 관련된 개발비용을 언제 자본화하기 시작해야 하는가?



Solution

아츠파마는 IAS 38 문단 57의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해야 한다.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대개 시판승인 전에 개발비용을 지출한다. 다른 적응증에 대한 개발원가에 대한 명확한 자본화 개시시점은 없다. 경영진은 각 프로젝트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아츠파마는 다른 적응증에 대한 시판승인 이전에 자본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준 승인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은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새로운 용도의 효과 입증과 관련된 위험;
- 다른 적응증(새로운 부작용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유의하게 다른 투여량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 새로운 용도가 다른 환자 그룹(예: 어린이 대 성인)을 대상으로 할지 여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신약과 비슷하고, 상업적 실현가능성이 시판승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판승인 전에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1.11 성능 비교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Background

(주)반고흐는 새로운 항우울제에 대한 시판승인을 얻어 상업화를 시작했다. (주)반고흐는 현재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경쟁 약품 대비 자사 약품의 장점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주)반고흐의 판매 활동에 도움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판승인을 위한 요건은 아니다.



Relevant guidance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다[IAS 38 문단 8].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IAS 38 문단 66].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광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IAS 38 문단 69].

특정 적응증에 대한 상대적 효능을 판단할 목적으로 다양한 의약품과 비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개발원가로 자본화 해야 하는가?



Solution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효능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에 소요된 지출은 IAS 38에 따른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할 수 없다. 자산을 사용하게 된 후의 개발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가 아니다.

이 연구는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출된 금액의 성격은 마케팅 및 판매 비용이다. 이 비용은 손익계산서 상 적절한 분류에 반영되어야 한다.

1.12 소규모 환자 그룹을 치료할 약품의 개발원가



Background

제약회사인 다빈치파마는 현재 소수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특정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평판을 위해 해당 약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빈치파마는 이 약에 대해 혁신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약효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다빈치파마는 시판승인을 받았으며, 시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고는 IAS 38 문단 57의 모든 자본화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Relevant guidance

개발비의 자본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한 가지 기준은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야 하며,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IAS 38 문단 57(d)]。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만 인식하여야 한다[IAS 38 문단 21]。

제한된 시장을 위한 개발원가를 자본화해야 하는가?



Solution

개발원가의 자본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가 상기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는 강한 징후는 최종적으로 시판승인을 얻었을 때 발생한다. 다빈치파마는 IAS 38의 기준을 충족할 때, 해당 약품의 개발원가를 자본화해야 하며 이는 시판승인을 받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다빈치파마는 매 보고기간마다 자본화 된 원가의 손상징후가 있는지 평가하고[IAS 36 문단 9], 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는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IAS 36 문단 10].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우려는 손상의 징후가 될 수 있다.

1.13 특허 보호비용



Background

벨라스케스파마는 현재 시판중인 약품에 대해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우셀로제약은 해당 약품의 유효 성분(Active ingredient)을 복제하여 특허 보호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다. 벨라스케스파마는 재판에 들어갔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무형자산의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자본화 할 수 있다 [IAS 38 문단 20].

제약 특허를 방어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을 자본화해야 하는가?



Solution

벨라스케스파마는 특허방어비용을 자본화 하지 않아야 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가는 IAS 38 문단 20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보호비용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1.14 우선심사권



Background

제약회사인 이그램은 희귀 소아질환 백신을 개발하였다. 이 백신은 마킹승인(Marking approval)을 받았을 때, FDA로부터 소아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PRV)을 받았다. PRV는 보유자에게 미래의 약물 적용에 대해 표준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FDA의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유자는 PRV를 자신의 적용 프로그램 중 하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다. PRV는 FDA가 약물 적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그램은 해당 PRV를 제약회사 피오렐에게 C65백만에 팔았다.



Relevant guidance

다음의 경우에 무형자산을 인식한다[IAS 38 문단 21]:

- a.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 b.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발생가능성의 영향은 자산의 원가에 반영되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IAS 38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피오렐은 취득한 PRV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PRV는 다른 회사에 매각되거나, 이전될 수 있고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므로 식별 가능하다. PRV는 FDA의 심사를 신속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잠재적으로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피오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별도로 취득하는 경우에 IAS 38 문단 25의 인식기준이 충족된다. C65백만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그 원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오렐은 PRV를 재무상태표에 원가로 인식해야 한다.

피오렐은 IAS 38 문단 88에 따라 PRV의 내용연수가 한정적인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후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PRV는 한정적인 내용연수를 가지며, 이는 FDA의 우선심사가 실행되거나 PRV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자산은 생산량에 비례하여(사용할 때) 소비되므로 생산량비례법이 가장 적절한 상각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피오렐이 우선심사권을 사용할 때, PRV는 상각이 종료될 것이다.

1.15 무형자산의 교환



Background

제약회사 이그램은 간염 백신을 개발 중이다. 제약회사 피오렐은 흉역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그램과 피오렐은 두 제품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그램과 피오렐은 자신들이 처분한 제품에 대해 어떠한 지속적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그램의 물질(Compound)의 공정가치는 C3백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장부금액은 C0.5백만이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을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또는
-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IAS 38 문단 45]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IAS 38 문단 46]:

-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 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
- (3)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38 문단 47].

이그램 경영진은 백신 제품의 교환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서로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 제품의 교환은 상업적인 실질을 가진다. 이그램은 간염 백신을 흉역 백신으로 교환한다.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가치는 서로 다르다. 이그램 경영진은 수령한 물질을 제공한 물질의 공정가치인 C3백만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지속적인 관여가 없기 때문에 C2.5백만(C3백만-C0.5백만)의 교환으로 인한 이익도 인식해야 한다.

1.16 무형자산의 일부 처분



Background

자이언트사는 간염 백신을 개발 중이며, 헤라클레스사는 홍역 백신을 개발 중이다. 자이언트와 헤라클레스는 이 두 제품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자이언트는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자사 약품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자이언트의 물질의 공정가치는 아시아 지역 마케팅 권리와 관련된 C0.2백만을 포함하여 C3백만으로 평가되었으며, 해당 물질의 장부금액은 C0.5백만이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을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또는
-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IAS 38 문단 45]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IAS 38 문단 46]:

-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 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한다.
- (3)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38 문단 47].

**이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자이언트 경영진은 백신 제품의 교환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자이언트 경영진은 수령한 물질을 제공한 물질의 공정가치인 C2.8백만(C3.0백만–C0.2백만)으로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 마케팅 권리와 관련된 C0.2백만의 공정가치는 그 권리가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영진은 C2.3백만[C2.8–(0.5–((0.2/3)×0.5))]의 교환으로 인한 이익도 인식해야 한다.

1.17 라이선스 아웃 관련 무형자산의 제거



Background

제약회사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약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A사는 B사에게 미국에서 관절염 치료제를 판매하고 광고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영구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A사는 미국 외 전 세계에서 이 약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A사는 관절염 치료제를 계속 제조할 것이다.
- B사는 A사에게 원가에 공정가치 수준의 이윤을 더 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할 것이다.

본 계약에 따라 B사가 지급할 대가는 다음과 같다:

- 선불금 C10백만
- 매출액이 C30백만을 초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마일 스톤 지급액 C5백만
- 매출의 5% 로열티

A사는 관절염 치료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C15백만의 자본화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40%이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IAS 38 문단 112]:

- a. 처분하는 때; 또는
- b.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제거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IAS 38 문단 113].

무형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 금액은 IFRS 15 문단 47~문단 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IAS 38 문단 116].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판매기준 로열티에 대한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IFRS 15 문단 B63]:

- a. 후속 판매나 사용
- b. 판매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IFRS 15 문단 B63].

A사는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권리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A사는 B사에게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은 수령하는 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이다.

보유금액에 비례하여 제거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A사는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40%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미국 외의 국가에 대한 권리와 비교하여 미국에 대한 권리의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무형자산 제거로 인한 손익을 포함한 수익은 IFRS 15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에 대한 대가는 고정요소(선불금)와 2가지 변동요소(마일스톤과 로열티)로 구성된다. 최초에는 고정대가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로열티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후속매출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따라서 변동대가는 무형자산 제거에 따른 손익계산에서 제외된다. 변동대가는 관련 매출 발생 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미국에서의 권리에 대한 처분 이익은 C4백만으로 인식한다(즉, 선불금 C10백만에서 처분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C6백만(C15백만×40%로 계산)을 차감한 금액).

참고: 제거된 권리와 관련된 미래 마일스톤 및 로열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제거되지 않은 잔여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손상계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1.18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특허권



Background

(주)부오나로티는 특허권 취득을 위해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다. (주)부오나로티는 회사가 발행한 상장 주식의 5%를 대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Relevant guidance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IFRS 2 문단 10].

상장주식을 대가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나?



Solution

주식을 대가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기준 보상거래이다. (주)부오나로티는 특허권을 특허권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특허권의 취득일에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IFRS 9과 IFRS 15에 따른 특허권 판매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Solution 5.17에 설명되어 있다.

1.19 기술의 라이선스 취득



Background

제약회사인 리갈과 심바의 심바의 노하우와 기술(C3백만의 공정가치)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에이즈 치료제를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갈은 다른 프로젝트에 해당 노하우와 기술을 사용해선 안된다. 리갈은 회사의 시설에서 10년 동안 심바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 계약에 따르면, 리갈은 기술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로 심바에게 환불 불가한 C3백만을 지불해야 한다.

리갈의 경영진은 에이즈 치료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성이 높거나, 관련 시판승인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였다.



Relevant guidance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IAS 38 문단 21]: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가능성의 효과는 자산 원가에 반영되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IAS 38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리갈은 라이선스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라이선스는 IAS 38 문단 25에 따라 자본화하는 별도로 취득한 무형자산이다.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은 구매자가 지불할 준비가 된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권은 라이선스 원가인 C3백만으로 측정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Solution 1.29 참고). 이 예시에서는 약품 제조가 시작될 때 기술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 상각비는 약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비용의 기능별 분류 시)나 상각비(비용의 성격별 분류 시)로 표시해야 한다.

리갈은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고 자본화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내부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계속해서 비용처리한다. IFRS 15에 따른 심바의 회계처리는 Solution 5.18을 참고한다.

1.20 개발 중인 약품의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Background

제약회사인 사전트와 샤갈은 사전트가 샤갈로부터 신규 항생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샤갈은 계속해서 약품을 개발할 것이고, 사전트는 항생제가 승인되면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될 것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전트는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 a. 계약 체결 시 C20백만의 계약금
- b. 임상 3상 승인 시 C50백만의 마일스톤 지급
- c. 최종 승인 시 C80백만의 마일스톤 지급

개발 서비스는 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지불된다.



Relevant guidance

기업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발생가능성의 효과는 자산의 원가에 반영되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IAS 38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IAS 38 문단 26].



Solution

사전트는 C20백만의 계약금은 연구개발에 대한 선급액이 아닌 자산취득을 위한 지급액이라고 평가했다. 별도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IAS 38 문단 25에 따라 자본화한다. 경제적 효익 발생가능성은 판매자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인 C20백만으로 인식된다.

미래의 마일스톤은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마일스톤은 개발업무 이웃소싱에 대한 대가이거나, 식별가능한 자산의 취득일 수 있다.

지급의 실질에 따라 그 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급에 부여된 명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영역이며, 사전트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급이 검증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활동수행 시 지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검증가능한 결과는 임상 3상의 성공적인 완료가 될 것이다. 검증가능한 결과에 대한 지급은 무형자산의 추가적 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활동수행은 임상실험을 위해 3,000명의 환자를 등록하는 작업일 것이다. 환자 등록에 대한 지급은 개발단계에서 수행되는 정상적 활동이다.

사전트가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실험의 성공적인 결과 및 시판승인을 위한 것이다.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은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누적될 것이다. 개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별도 대가가 지급되므로, 마일스톤이 개발 서비스에 대한 선급액일 가능성은 낮다.

무형자산의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정책은 원가누적 접근법이나 금융부채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변동대가는 원가누적 접근법을 따른다. 조건부 대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발생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된 자산의 원가에 기산한다.

1.21 라이선스 이용자가 개발작업을 진행하는 개발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취득



Background

(주)바이오텍은 임상 2상을 통해 Q증후군에 대한 치료 약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주)바이오텍과 대형 제약 회사인 (주)파마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 (주)바이오텍은 Q증후군 치료를 위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주)파마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주)바이오텍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및 기초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 (주)파마는 (주)바이오텍에서 개발한 약품에 대한 모든 임상 3상 개발작업을 지원하고 수행한다.
- 제품개발을 총괄하는 개발위원회가 있다. 개발위원회는 제품에 관한 모든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주)바이오텍은 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바이오텍은 (주)파마에게 특허권의 무단사용을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을 제공한다.
- (주)바이오텍은 나머지 국가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주)파마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계약체결시 C10백만의 계약금
- 시판승인시 C20백만의 마일스톤
- 매출액의 15% 로열티
- 연간 매출액이 C500백만을 초과하는 첫 해의 매출 마일스톤 C20백만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지불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없다.



Relevant guidance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발생가능성의 효과는 자산 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a)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특히 그 구입 대가가 현금이나 그 밖의 화폐성 자산일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IAS 38 문단 26].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적 지출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자본화 할 수 있다[IAS 38 문단 20].

(주)파마는 라이선스 취득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선구매한 물질은 별도로 취득한 무형자산이며, IAS 38 문단 25에 따라 자본화한다. (주)바이오텍은 개발용역에 대한 더 이상의 수행의무가 없다. 무형자산은 C10백만의 원가로 인식된다.

미래의 마일스톤은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마일스톤은 개발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대가이거나, 식별가능한 자산의 취득일 수 있다.

지급의 실질에 따라 그 분류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급에 부여된 명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 영역이며, (주)파마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급이 검증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활동 수행 시 지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검증가능한 결과는 임상 3상의 성공적인 완료가 될 것이다. 검증가능한 결과에 대한 지급은 무형자산의 추가적 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활동 수행은 임상실험을 위해 3,000명의 환자를 등록하는 작업일 것이다. 환자 등록에 대한 지급은 개발단계에서 수행되는 정상적 활동이다.

Sargent가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실험의 성공적인 결과 및 시판승인을 위한 것이다. 마일스톤은 자본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원가에 누적될 것이다.

무형자산의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정책은 원가누적 접근법이나 금융부채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변동대가는 원가누적 접근법을 따른다. 조건부 대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발생시점에 최초로 인식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로열티는 대상 매출에 따라 발생하며 매출원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IFRS 15 지침은 Solution 5.22를 참조한다.

1.22 라이선스 제공자가 개발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개발단계 물질의 라이선스 취득



Background

(주)바이오텍은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이다. (주)바이오텍은 (주)파마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바이오텍은 (주)파마에게 제품을 제조, 판매 및 마케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시판승인을 받을 책임은 바이오텍에게 있다.
- (주)바이오텍은 특허권의 무단사용을 방어해주겠다는 약속을 (주)파마에게 제공한다.

본 약정에 따라 (주)파마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다:

- C10백만의 계약금
- 임상 3상을 위해 1,000명의 환자 등록 시 지불될 C20백만의 마일스톤
- 시판승인에 따른 C10백만의 마일스톤
-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로열티



Relevant guidance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IAS 38 문단 26].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적 지출은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자본화할 수 있다[IAS 38 문단 20].

(주)파마는 라이선스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주)파마는 계약금이 무형자산 취득을 위한 대가인지 아니면 연구개발비용의 선급인지 평가해야 한다. 연구개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지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구개발비용의 선결제일 가능성이 크다. 선급금으로 인식된 부분은 개발기간 동안 손익계정으로 대체된다.

미래에 지출되는 마일스톤은 자본화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마일스톤은 아웃소싱 개발작업에 대한 대가이거나 식별가능한 자산취득의 대가일 수 있다.

지출의 실질에 따라 분류가 결정되어야 하며, 지출의 명목은 분류 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 영역이며, (주)파마는 내부적으로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마일스톤 지출이 검증가능한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검증가능한 결과는 시판승인이며, 이러한 검증가능한 결과에 따른 지출은 기업이 통제하는 무형자산의 추가 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시판승인에 대한 C10백만의 마일스톤은 자본화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무형자산의 원가로 누적될 수 있다. 활동 수행에 대한 대가는 정상적인 연구개발활동이므로 비용처리해야 한다.

IFRS 15 지침은 Solution 5.23을 참조한다.

1.23 연구활동 수행에 대한 계약금



Background

아스트로제약은 수탁연구기관(CRO)과 계약하여, 에이즈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2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CRO는 현대식 시설과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우수한 실무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CRO는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상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C3백만을 받는다. CRO는 분기별로 연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아스트로제약에 제출해야 한다. 아스트로제약은 잠재적인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수행된 모든 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CRO는 자체연구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Relevant guidance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54].

아스트로제약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본 지출은 외부 CRO에게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지급되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자본화될 수 없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연구활동기간에 걸쳐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으로 인식된다.

1.24 개발 후보물질 도출 연구의 회계처리



Background

시슬리제약은 항고혈압 치료제 후보물질들을 연구하기 위해 라이트제약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슬리제약은 라이트제약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원가 가산방식으로 보상하며, 시슬리제약이 후속개발을 선택하는 경우 후보물질당 C100,000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슬리제약은 후보물질에 대한 시판승인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시슬리제약은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것이다. 2년 후, 라이트제약은 시슬리제약이 사용할 10개의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Relevant guidance

연구단계(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단계(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54].

관련 기준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IAS 38 문단 57].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IAS 38 문단 71].

시슬리제약은 라이트제약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연구단계의 지출은 자본화할 수 없다. 시슬리제약이 계약에 따라 원가가산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비용처리해야 한다. 성공적인 것으로 식별된 후보물질과 관련하여 시슬리제약이 지급하는 금액 또한 즉시 비용처리해야 한다. 후보물질은 이전에 시슬리제약이 식별했던 것이므로, 별도의 무형자산이 취득된 것은 아니며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전에 지출된 연구비는 이러한 권리와 관련하여 환입 및 자본화될 수 없다.

1.25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 개발



Background

티풀로제약은 제3자인 틴토레토연구소를 임명하여 티풀로제약이 소유한 기존물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틴토레토연구소는 개발단계에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순전히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시판승인 후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티풀로제약은 물질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틴토레토연구소는 마케팅 및 생산 준비에 참여하지 않는다. 마일스톤 계획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티풀로제약은 틴토레토연구소에게 다음과 같은 상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계약 체결 시 C2백만
- 성공적으로 임상 2상 완료 시 C3백만



Relevant guidance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확률의 효과는 자산의 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다른 기준들 중에서도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되어야 한다[IAS 38 문단 57].

**티풀로제약은 자사 소유의 지적재산을
제3자가 개발하는 개발(R&D) 협약에서
계약금과 후속 마일스톤 지출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티풀로제약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틴토레토연구소는 티풀로제약을 대신하여 개발작업을 수행한다. 소유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은 계약 당사자간에 양도되지 않는다. 티풀로제약은 틴토레토연구소에 초기 계약금과 이후의 마일스톤을 지출함으로써 자본화될 수 있는 별도의 무형자산을 취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IAS 38 문단 57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출액은 개발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아웃소싱 R&D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다.

1.26 지적재산의 공동 개발



Background

티풀로제약은 제3자인 틴토레토연구소를 임명하여 티풀로제약이 소유한 기존물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본 계약에 따라 티풀로제약의 물질을 틴토레토연구소에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공한다. 티풀로제약과 틴토레토연구소는 공동개발을 위한 개발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특정 조건에 따라 개발비용을 분담할 것이다. 티풀로제약은 틴토레토연구소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계약서 서명 시점에 C5백만의 선금금. 틴토레토연구소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하면 선금금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선금금 공제 후) 총 개발비용의 50%

티풀로제약은 이 약물을 상업화할 것이다. 개발 및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틴토레토연구소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받게 된다.



Relevant guidance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확률의 효과는 자산의 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25].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IAS 38 문단 27]:

-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다른 기준들 중에서도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되어야 한다[IAS 38 문단 57].

티풀로제약은 제3자가 지적재산을 개발하는 R&D 계약에서 선금금 및 후속 마일스톤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тин토레토연구소 티풀로제약의 물질개발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당사자가 된다. 물질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활동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보상받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미래 제품의 잠재적 성공 여부에 집중하도록 한다).

티풀로제약은 지속적인 개발비용과 물질개발의 잠재적 실패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티풀로제약은 환불가능한 선금금과 후속 마일스톤(총 개발비용의 50%로 결정)을 지출함으로써 자본화할 수 있는 별도의 무형자산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지출액은 자사 소유의 지적재산에 대한 제3자의 자금 지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금금 및 마일스톤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티풀로제약은 최초에 C5백만을 선금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임상 2상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계약기간 동안 동 선금비용을 R&D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1.27 연구에 대한 원가가산 보상 계약



Background

휘슬러 주식회사는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러스킨과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러스킨은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분류할 것이다.

휘슬러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러스킨이 부담하는 직접원가를 모두 보상해 주며, 작업이 완료되면 분기별로 25%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다.



Relevant guidance

연구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54]. 연구활동의 예로는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이 있다[IAS 38 문단 56(3)].

개발활동의 예로는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 있다[IAS 38 문단 59(4)].

휘슬러 주식회사는 임상시험 약정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휘슬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러스킨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동 계약의 활동은 기준서상 '연구'의 정의에 포함된다. 동 계약에 따른 활동은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될 수 있는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휘슬러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가가산방식이 아닌 확정 금액이더라도 자본화되지 않고 비용처리하는 회계처리는 동일하지만 지출시점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처리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연구비용은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1.28 무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Background

연구소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특정 비용을 자본화 했다. 이러한 비용은 시판승인을 획득한 후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IAS 38 문단 57의 자본화 조건 충족한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IAS 38 문단 97].

내용 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IAS 38 문단 8].

경영진은 최초 취득 시 및 매 회계연도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검토해야 한다[IAS 38 문단 88, 104].

자본화된 개발비(내용연수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포함)의 내용연수를 결정함에 있어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Solution

경영진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산업별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제품 특허권 또는 라이선스 기간
- 특허 만료 후 예상되는 제품판매 기간
- 동종 업계 경쟁자

1.29 상각 개시시점 ①



Background

제약회사는 20X3년 1월 1일에 임상 3상 단계의 물질을 C5백만에 취득하였다. 기업은 20X4년 3월 1일에 시판 및 마케팅 승인을 받고 20X4년 6월 1일 생산 공정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시작한다. 기업은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한다.



Relevant guidance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IAS 38 문단 97].

기업은 언제 무형자산 상각을 개시해야 하는가?



Solution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인 20X4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X4년 3월 1일 전까지는 무형자산은 손상징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적어도 연 1회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IAS 36 문단 10(1)].

1.30 상각 개시시점 ②



Background

제약회사는 20X3년 1월 1일에 약물 전달 방식과 관련된 특정 플랫폼 기술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C5백만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기술은 범용성 있는 기술이며, 기업은 해당 기술을 구입한 직후 개발 중인 신약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약의 제조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 중이다. 기업은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한다.



Relevant guidance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IAS 38 문단 97].

기업은 언제 무형자산 상각을 개시해야 하는가?



Solution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인 20X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 기술은 범용성 있는 기술로서 개발중인 신약뿐만 아니라 현재 시판 중인 약의 제조에도 사용 가능하므로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도달한 시점은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IAS 38 문단 97].

1.31 개발비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Background

라파엘(주)는 승인된 제품의 상업적 생산 및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 제품의 개발원가는 IAS 38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본화 되었다. 신제품의 기반 특허권은 10년 후에 만료되며 경영진은 특허가 만료된 후 유의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IAS 38 문단 97].

허용되는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리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 일관되게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IAS 38 문단 98].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기타 법적권리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IAS 38 문단 94].

**약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
자본화된 개발비를 상각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Solution

이 특허는 10년 동안 독점권과 프리미엄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경제적 효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비된다. 특허의 제한요인은 시간이다. 이 약이 블록버스터급이거나 기대치를 뛰어 넘는지, 또는 손익분기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같이 소비될 것이다. 정액상각법은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에서 더 짧은 기간에 걸쳐 특허가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한, 라파엘(주)은 특허권의 10년 존속기간에 걸쳐 자본화된 개발비를 정액으로 상각해야 한다. 이 잔여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각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라파엘(주)은 손상징후를 식별할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1.32 무형자산의 상각



Background

라파엘(주)는 승인된 제품의 상업적 생산 및 마케팅을 시작했다. 생산은 다른 제품의 생산에 20년간 사용될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신제품의 기반 특허는 10년 후에 만료된다.

신제품에 대한 20년 기간의 기술 라이선스 선급금 및 개발비는 IAS 38에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본화되었다.



Relevant guidance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IAS 38 문단 97].

허용되는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리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IAS 38 문단 98].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IAS 38 문단 9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Solution

각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특허권에 귀속되는 무형자산은 10년의 기대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기술력에 귀속되는 무형자산은 20년의 전체 라이선스 기간 동안 상각해야 한다. 정액법 사용은 시간 경과에 따라 특허권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한다. 기술이나 특허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라파엘(주)은 손상 테스트를 수행해야하며, 단축된 잔여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33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Background

제약회사의 경영진은 사업 결합의 일환으로 브랜드명이 붙은 제네릭 의약품을 인수했다. 이 브랜드는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주자이며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보유한다. 경영자는 이 브랜드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보고 상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IAS 38 문단 88].

경영진은 브랜드의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경영진은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경영진은 IAS 38에 따라 브랜드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진은 회수가능액을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의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IAS 36 문단 10(1)].

기술 및 의학의 발전은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될 상황을 감소시킬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 특허권 내용연수의 결과로 원료의약품성분(API)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질 것이다.

1.34 손상징후 – 무형자산



Background

제약회사는 다수의 제품을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고 상각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IAS 36 문단 9].

손상징후는 외부 또는 내부에 있을 수 있다. 손상징후 사례는 기준서에 포함되어 있다[IAS 36 문단 12].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손상징후는 무엇인가?



Solution

제약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상징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경쟁 의약품의 개발;
- 특히,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다루는 규제환경의 변화;
- 치료 대상 질병의 돌연변이에 따른 약물 효능 장애;
-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 및/또는 기술의 발전;
- 예측보다 저조한 판매량;
- 브랜드 명성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의 영향;
- 유사한 자산의 경제적 수명의 변화;
- 소송;
- 다른 무형자산 또는 유형자산과의 관계.
-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정책, 건강보험 및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예상되는 변경.

1.35 손상징후 – 유형자산



Background

글로제약은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연구결과가 좋지 않아 동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영진은 더 이상 이 제품으로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된다고 의료 당국에 통보했다. 유형자산(PPE)은 중단된 제품의 생산에만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체적인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IAS 36 문단 9].

기업은 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 정보 원천을 고려해야 한다[IAS 36 문단 12].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 금액은 손상차손이다[IAS 36 문단 59].

글로제약은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가?



Solution

손상징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 유형자산의 대체적인 용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방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진은 이 사건이 보유 중인 다른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시판된 제품과 관련하여 인식된 무형자산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6 개발이 중단된 취득한 물질



Background

세라제약은 임상 1상 진행 중인 신약 물질을 취득했다. 세라제약은 약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였다. 약물 취득 직후, 1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약물이 의도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은 해당 약물의 개발을 중단하였다.

세라제약의 연구진은 취득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세라제약의 다른 약물 중 하나를 개발할 때 사용할 것이다.



Relevant guidance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해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IAS 38 문단 97].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 금액은 손상차손이다[IAS 36 문단 59].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의된다[IAS 36 문단 18].

세라제약은 신약 물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세라제약은 무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아직 무형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각을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 임상시험의 저조한 결과는 무형자산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경영진은 관련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손상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감액해야 할 수 있다.

1.37 병용 요법에 사용된 물질



Background

피카소제약은 임상 1상 진행 중인 신약 물질을 취득했다. 피카소제약은 약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였다. 그 결과, 피카소제약의 연구진은 신약 물질이 다른 약과 병용 요법에서 사용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경영진은 신약개발활동을 중단한다.

병용 요법을 위해 새로운 1상 임상시험이 개시되었다.



Relevant guidance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해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IAS 38 문단 97].

피카소제약은 신약 물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피카소제약은 무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아직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각을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 피카소제약은 병용 요법이 시판승인을 얻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 상각을 개시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초기 의약품 개발의 중단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는다. 무형자산은 피카소제약에 의해 계속 개발될 것이며, 피카소제약은 신약 물질을 병용 요법에 투입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8 시판승인 전 IPR&D의 손상



Background

달리제약은 별도로 취득한 IPR&D를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했다. 달리제약은 개발진행 중 무형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물질과 관련된 부작용을 식별하였으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Relevant guidance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손상차손은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기능에 포함된다[IAS 1 문단 IG5].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달리제약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인식하게 된 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Solution

달리제약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약물과 관련된 손상차손을 IPR&D 비용의 구성요소로 분류해야 한다. 달리제약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경우 그 비용을 손상차손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는 IAS 1 문단 한138.2를 고려하여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항목으로 분류됩니다.

1.39 시판승인 후 개발비의 손상



Background

달리제약은 시판승인되어 판매되는 약물과 관련하여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했다. 제네릭 약물의 조기 출시로 인해 경쟁적 가격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달리제약은 무형자산의 손상을 인식하게 되었다.



Relevant guidance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손상차손은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기능에 포함한다[IAS 1 문단 IG5].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달리제약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발비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Solution

달리제약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상각비와 일관되게 손상차손을 분류해야 한다. 달리제약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상차손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는 IAS 1 문단 한138.2를 고려하여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항목으로 분류됩니다.

1.40 단일 시장 손상 회계처리



Background

베로네제(주)는 유럽에서 국소 살균제 크림을 판매할 권리(権利)를 취득했다. 취득한 권리는 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리스에 있는 환자들은 크림 사용으로 물집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서 베로네제(주)는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회수하게 되었다. 그리스 시장에서의 살균제 판매는 유의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IAS 36 문단 9].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한다[IAS 36 문단 12(6)].

베로네제(주)는 특정 지역에서 약물의 판매 승인이 철회된 것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본 사례에서 판매 권리의 현금창출단위는 유럽 전역으로부터의 판매로 본다.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것이다. 베로네제(주)는 그리스 시장에서의 철수가 유의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베로네제(주)의 경영진은 한 국가에서 물집이 발생하는 현상이 다른 지역의 잠재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를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베로네제(주)가 그리스에서 시판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자산화 한 개발원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철수시킴에 따라 해당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1.41 손상차손의 환입(원가모형)



Background

루벤스(주)는 체중 감량 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개발원가를 자산화 하였다. 경쟁사 약품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루벤스(주)는 자본화 된 개발비 무형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경쟁 약품의 출시로 자산의 예상 회수 가능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쟁 약품은 안전상의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루벤스(주) 약물의 시장 점유율과 예측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되었다.



Relevant guidance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지만, 과거 기간에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상각이나 감가상각으로 조정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의 환입이다[IAS 36 문단 114].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매각에서 추정되는 용역잠재력의 증가를 반영한다. 기업은 용역잠재력을 높이는 추정치의 변경을 식별해야 한다[IAS 36 문단 115].

**원가모형에서 무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해 루벤스(주)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경쟁사 약품의 퇴출은 손상차손환입을 나타내는 징후에 해당된다. 장부 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수정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 인식되었을 상각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2 손상검사와 내용연수



Background

안젤리코(주)는 블록버스터급 항우울제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라인은 대체적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쟁사가 더 나은 효능으로 새로운 항우울제를 출시함에 따라, 안젤리코(주)는 자사 약품의 판매가 빠르고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영진은 판매 마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를 손상징후로 식별했다. 경영진은 이전에 계획되었던 것 보다 더 빨리 약품에 대한 판매를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evant guidance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IAS 36 문단 9].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의된다[IAS 36 문단 18].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IAS 36 문단 19].

비록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이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잔여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IAS 36 문단 17].

안젤리코(주)는 손상징후가 식별된
유무형자산의 손상과 내용연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Solution

안젤리코(주)는 항우울제의 현금창출단위(생산 라인 포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판매로부터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안젤리코(주)는 손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안젤리코(주)는 잔여 내용연수를 판매가 예상되는 수정된 기간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2

제조와 공급과정



2.1 개발 중인 시험생산배치(Trial batch)의 회계처리



Background

한 연구실에서 새로운 아스피린 제형을 만들기 위해 특정 온도에서 성분을 혼합하는 기계장치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연구실은 관계당국으로부터 유효성 검사(즉, 기계사용 승인)를 받기 위해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해당 아스피린 배치를 생산한다. 기계장치의 유효성 검사는 새로운 아스피린 제형의 시판승인과는 별도의 과정이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자료나 소모품

경영진은 원자료 및 시험생산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경영진은 시험생산을 위해 취득한 원자료를 다른 승인된 의약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재고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험생산배치는 향후 대체용도가 없으며, 약품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관련 약품은 임상 3상 진행 중). 시험생산배치(식별된 관련 원자료 포함)는 생산될 때 손익계산서에 연구개발비로 인식해야 한다.

2.2 유효성 검사 생산 배치(Validation batch)의 회계처리



Background

연구실은 새로운 제형의 아스피린을 생산하기 위해 특정 온도에서 성분을 혼합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다. 기계장치를 아스피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사(즉, 관계당국의 사용 승인)가 필수적이다. 연구실은 해당 기계장치를 통해 아스피린 배치를 시험 생산하여 유효성 검사를 완료하였다. 시험 생산된 아스피린 배치는 기계장치의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외부에 매각할 수는 없다.



Relevant guidance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IAS 16 문단 16]:

-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순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IAS 2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IAS 16 문단 20A].

아스피린 배치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자본화 해야 하는가?



Solution

연구실은 아스피린 배치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비를 자본화해야 한다. 기계장치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사가 필수적이고, 유효성 검사에는 아스피린 배치의 시험 생산이 필수적인데, 생산된 배치의 경우 외부에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투입된 원재료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직접관련원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계장치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배치의 판매로 매각금액의 수령이 예상된다면, IAS 16 문단 20A에 따라 관련 원가를 재고자산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매각 시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등 관련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시험 생산과 직접 관련된 노무비가 존재한다면, 해당 노무비도 기계장치의 원가로 자본화 될 것이다. 그러나, 시험 생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비용(예, 자재, 노동 또는 기타 자원의 낭비)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3 개발용 자재 및 소모품



Background

파마는 연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자재와 소모품을 구입했다. 해당 자재 및 소모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파마는 재판매 할 의도는 없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자료나 소모품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IAS 38 문단 8].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5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IAS 38 문단 66]: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68]:

- (1)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IAS 38 문단 69].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CF 문단 4.14].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는 기업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하

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취득하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이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화의 경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CF 문단 4.18].

연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 및 소모품은 언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가?



Solution

파마가 구입한 자재 및 소모품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할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실체가 있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자재 및 소모품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판매 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의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타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파마는 원가와 회수가능액 중 낮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자재 및 소모품을 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연구 활동에 사용될 때까지는 대체 용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재 및 소모품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타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체 용도를 가지고 있어 '기타자산'으로 인식한 자재 및 소모품의 경우 IAS 38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재 및 소모품은 연구 활동에 사용될 때 IAS 38 적용 범위에 속하며, 관련 원가는 (IAS 38 문단 57의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손익계산서 상 연구개발비로 인식된다. 사례에서 파마의 자재 및 소모품은 연구 활동에 사용되기 전에는 다른 활동에 사용될 잠재력으로 인해 '기타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므로(즉, 대체 용도가 존재하므로), IAS 38 문단 69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9월 IFRIC은 판촉 활동을 위해 제약회사가 취득한 재화(냉장고, 에어컨 및 시계)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다. 논의된 사실 관계에서 취득한 재화는 오직 판촉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고, IFRIC은 재화를 취득할 때 비용화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실 관계의 경우 기업이 판촉 활동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파마의 경우와 다르다. IFRIC은 안건 결정에서 취득한 재화의 경우 판촉 활동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으므로, 해당 재화의 유일한 효익은 IAS 38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 자산을 개발하거나 창출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으며, 따라서 상기 사례와 달리 재화 취득 시 '기타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2.4 재고자산으로서 원재료의 인식



Background

알트도르퍼는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벌크 재료를 구입한다. 이 재료는 시판 약품, 샘플 및 개발 중인 약품에 사용된다. 재료는 공용시설에 보관되며, 제조 및 개발 부서의 주문에 따라 생산시설로 이동된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최종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 구매한 원재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알트도르퍼는 시판된 약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원재료는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 패키지화된 시점에서 마케팅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원재료는 해당 재료가 개발 중인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단계로 넘어갈 때, 동 제품과 관련된 기타 연구개발비의 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2.5 시판승인 전 생산된 출시되지 않은 재고자산



Background

반아이크는 천식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경영진은 이 약품이 개발비의 자본화를 허용하기 위한 IAS 38 문단 57의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경영진은 개발이 성공할 확률이 40%이며 단기간에 최종 시판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아이크는 시판승인 후 즉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완제품의 재고를 비축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재고자산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재고자산의 비축은 최종 시판승인 이전에 소규모 생산으로 시작되며 승인 후에도 계속된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다[IAS 2 문단 28].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출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Solution

반아이크의 경영진은 천식 치료제가 최종 시판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시판승인 전에 제조된 재고자산은 즉시 0(생산 당시 판매로 인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감액으로 인식된 금액은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연구개발비로 인식해야 한다.

반아이크는 최종 시판승인을 얻음으로써 약품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회사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자본화하기 시작한다. 승인 전 인식한 평가손실은 최초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되어야 한다. 환입액은 매출원가 또는 연구개발비 중 적절한 계정에 인식된다.

2.6 승인신청 후 개발 중인 의약품 재고의 회계처리



Background

A연구소는 시판승인을 위한 최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판승인을 받는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15,000회 분의 신약을 생산했다. 그 약품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경영진은 그 약품들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자료나 소모품

‘개발 중인’ 약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A연구소는 생산한 약품을 회수가능한 범위까지 자본화해야 한다. 시판승인을 위한 최종 신청서 제출은 판매승인의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재고품목들은 완전히 회수가능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2.7 개발 중인 제네릭 약품 재고의 회계처리



Background

티나파마는 20X3년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제네릭 버전을 개발했다. 경영진은 제네릭 버전이 오리지널 약품과 화학적으로 동등하며, 경제적 효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경영진은 IAS 38 문단 5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20X3년 5월에 개발비를 자본화하기 시작했다.

티나파마는 20x3년 6월 제네릭 약품의 출시 전 재고자산 15,000회 분을 생산했다. 이 약품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는 만료되었고, 제네릭 버전에 대한 판매 승인은 20X3년 11월에 받았다. 경영진은 출시 전 재고자산의 원가를 20X3년 10월 말 재무제표에 자본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IAS 2 문단 6]: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개발 중인’ 제네릭 약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출시 전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영진이 개발비를 자본화하기로 한 결론은 제네릭 약품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출시 전 재고자산의 원가가 향후 판매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연말 이후에 받은 판매 승인은 경영진의 연말 평가를 확인하는 후속사건이다.

2.8 의약품 제조 시 백신 배양에 대한 회계처리



Background

카라바지오의 주력 제품은 백신이다. 백신의 항체는 바이러스 배양을 통해 만들어진다. 바이러스 배양과 그 결과로 생성된 항체는 카라바지오의 총재고자산 원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Relevant guidance

수확시점의 수확물과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생물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IAS 2가 적용된다[IAS 2 문단 2].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IAS 41 문단 5]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IAS 41 문단 12].

제약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백신 배양은 원가로 측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가?



Solution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므로 IAS 41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카라바지오는 IAS 2의 지침에 따라 백신 배양의 생산원가를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2.9 손상징후 – 재고 자산



Background

세리즈는 품질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특정 생산현장의 모든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리즈는 동 현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다. 세리즈는 동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상당한 수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IAS 2 문단 9].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IAS 2 문단 28]. 경영진은 매 후속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IAS 2 문단 33].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고가 손상되었는가?



Solution

세리즈는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 중단 및 제품 리콜은 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료 재고의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세리즈는 리콜의 이유, 과거 리콜 이력,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원자료의 대체 사용처 존재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품 리콜 외에도 제약 및 생명과학 산업 내의 손상지표는 다음과 같다:

- 특히 만료
- 법규 또는 내부 품질 요구사항 충족 실패
- 제품 또는 재료의 진부화
-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
-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제3자 보상정책의 변경 또는 예상되는 변경

3

R&D를 위한 자금조달



3.1 R&D 자금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 이자의 자본화



Background

P사는 암 치료제의 후기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제약회사인 Q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P사의 경영진은 약품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여, 시판승인 신청 후, 자본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P사는 IAS 23에 따라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



Relevant guidance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차입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 한다[IAS 23 문단 8].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IAS 23 문단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지출은 자산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IAS 38 문단 66].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는 재고자산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IAS 23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지출의 구성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규정한다[IAS 38 문단 66].

P사는 R&D 활동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득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는가?



Solution

개발비의 자본화 이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비가 자본화되면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한다. 약품이 완전히 개발되어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3.2 임상 3상 자금조달



Background

티풀로제약은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의약 물질인, 물질 X를 개발하고 있다.

랜돌프벤처는 티풀로제약을 위해 임상 3상 시험 연구 및 모든 등록 비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을 제안한다. 연구결과와 문서는 랜돌프벤처의 자산이 될 것이다.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약 물질 X가 임상 3상 시험에 실패할 경우, 랜돌프벤처는 모든 임상시험 결과를 보유하며, 티풀로제약은 관련 지적재산(IP)을 이전할 것이다.
- 티풀로제약은 물질 X가 시판승인에 성공할 경우, 연구결과와 문서들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 티풀로제약은 추정 개발비용의 150%를 시판승인에 대한 마일스톤으로 지불할 것이며, 향후 5년 간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지불할 것이다.

랜돌프벤처는 본인을 대신하여 임상 3상 시험에 필요한 개발활동을 수행할 외주개발업체로 티풀로제약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티풀로제약은 필요한 임상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이며, 계약에는 물질 X의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Relevant guidance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IAS 32 문단 11]. 금융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IAS 32 문단 25].

티풀로제약은 물질 X의 통제력을 상실했는가?

티풀로제약은 수취한 자금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Solution

1. 티풀로제약은 물질 X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는가?

티풀로제약은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임상 3상 연구결과를 취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시점에 임상 3상 연구의 소유자를 위한 잠재적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한적이다. 기초 물질에 대해 특허 받은 지적재산권 없이 임상연구결과의 대체 용도는 없다. 티풀로제약은 임상 3상 시험을 종괄하며, 물질 X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2. 티풀로제약은 수취한 자금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랜돌프벤처는 임상 3상 시험에 자금을 제공했다. 계약서에는 티풀로제약이 임상 3상 시험이 성공하면 수령한 현금의 150% 및 매출 기준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티풀로제약은 임상시험의 성공하지 못 할 경우 물질 X의 IP를 이전해야 한다. 티풀로제약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즉, 임상 3상 시험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티풀로제약은 오직 비금융부채(지적재산권)의 정산에 의해서만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 시킨다.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후속적으로 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만약, 티풀로제약이 지불 추정액을 수정할 경우, 티풀로제약은 부채의 장부금액을 수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조정은 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시간의 경과는 할인액의 상각으로 처리되며, 이 또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IFRS 9 문단 B5.4.6].

Results:

실패하는 경우: 티풀로제약은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 재무제표의 물질 X에 대한 무형자산은 모두 제거해야 하며, 그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한다.

성공하는 경우: 성공하는 경우 문단 B5.4.6에 따라 부채의 조정이 필요하다[IFRS 9 문단 B5.4.60]. 티풀로제약은 미래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하고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개발비 관련 부채는 지급시점에 제거될 것이다.

R&D 자금조달 협약은 복잡하고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각 구조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3 R&D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및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대여금 및 보조금



Background

워홀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자금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졌으며, 약품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다.

이 현금은 워홀이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상업화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정부에 상환된다. 상환조건은 워홀이 약품을 팔기 시작하면 연간 매출액의 10%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워홀은 모든 지적재산을 정부에 양도해야 한다.



Relevant guidance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도 계약조건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분배를 하지 못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결제해야 하는 비금융의무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이 비금융의무를 결제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IAS 32 문단 20(1)].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보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동 대여금은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효익은 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그 효익은 IAS 2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IAS 20 문단 10A].

회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대여금은 IAS 32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지적재산과 연구결과로 의무를 결제해야만 현금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다.

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수취한 현금과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정부보조금으로, IAS 2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4 임상 3상을 위해 신설 회사로 자금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



Background

대형제약회사인 파르마는 임상 2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내부적으로 개발한 물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파르마는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엄선한 물질들에 대해서만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인 VC는 성공보수의 대가로 임상 3상 시험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다. VC는 신규회사인 NewCo를 설립하고, 파르마는 NewCo에게 임상 3상 시험을 수행하고, 시판승인을 얻기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협약은 NewCo가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Co는 3상 시험을 계약 연구 기관인 CRO에 아웃소싱할 것이며, VC는 NewCo를 판매할 수 없으며, NewCo는 어떤 물질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파르마는 NewCo 100%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옵션은 R&D 비용의 3배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행사할 수 있다. VC는 풀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NewCo를 파르마에 R&D 지출의 3배(즉, 성공보수)로 판매하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Relevant guidance

투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IFRS 10 문단 7]:

-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는 지시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IFRS 10 문단 12].

투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IFRS 10 문단 15].

어느 기업이 NewCo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Solution

파르마는 NewCo를 지배하므로 연결한다. 지배는 관련 활동에 대한 힘, 변동 이익에 노출, IFRS 10에 따른 힘과 이익의 연계를 요구한다. 의결권에 의해 지배를 받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는 단순하다. 지배력이 다른 방식으로 행사되는 구조화 기업이 존재한다. 다른 방식은 구조화 기업의 목적 및 설계의 결정에 대한 참여, 자산의 선택, 계약상 약정, 잠재적 의결권, 조건부 권리 및 구조화 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기업과 관련 있는 활동들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A. 관련 활동에 대한 권리

관련 활동은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각 제품의 최종 수익은 원본 물질에서 나온다. NewCo가 수행하는 개발은 기초가 되는 과학에 근거하여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관련 활동이다. 파르마와 VC가 합의를 통해 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르마가 제안할 후보 원본 물질들을 선택한다. 파르마는 또한 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은 자산 선택이 핵심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자산의 선택이 없다면, NewCo의 존립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B.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파르마는 물질에 대해 영(0) 또는 변동적인 양(+)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만약 물질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0)의 이익을 얻게 되고, 물질이 성공한다면, 이익은 미래의 매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IFRS 10 문단 15에서는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음(−)의 금액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파르마는 최초 자산의 선택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 이익에 대한 권리

IFRS 10 문단 B53에서는 관련 활동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현재 행사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관련 활동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임상에 성공한 약품이 파르마로 돌아오고, 시판승인을 얻고, 시장에 판매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4

사업결합 & 자산취득



4.1 단일 물질의 취득



Background

아톰은 바크의 단일 물질 A에 관심이 있다. 바크는 임상 1상 시험 중인 단일 물질 A를 신규 설립한 shell company인 NewCo에 출자하고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NewCo의 자산은 바크가 출자한 물질 A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전부이며, 고용된 과학자나 관리자, 기타 자산(개발 장비 등)은 없다. 아톰은 바크로부터 NewCo의 지분 100%를 취득했으며, 이는 아톰에게 NewCo와 물질 A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 아톰은 물질 A에 대한 시판 승인을 목표로 과학자와 장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바크는 물질 A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Relevant guidance

사업은 보통 산출물이 있지만,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산출물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정의에서 식별된 목적을 위하여 실행하고 운영하려면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에는 매도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은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함께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만 한다. 문단 B12~B12D는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IFRS 3 문단 B8].

**NewCo에 대한 아톰의 지분 취득은
사업결합인가?**



Solution

NewCo에 대한 지분 취득은 자산(물질 A에 대한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회계처리 해야한다. NewCo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입물과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IFRS 3 문단 B12B에서는 취득일에 산출물이 없는 경우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취득한 과정이 취득한 투입물을 산출물로 개발, 변환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며, 취득한 투입물은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과 그 조직화된 노동력이 산출물로 개발하거나 변환할 수 있는 그 밖의 투입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과정과 투입물에는 지적재산권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시판 승인을 얻고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화된 노동력(기술 및 지식, 경험을 갖춘 과학자나 연구원 등) 및 청사진, 계획, 규약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IFRS 3, IE92]. 아톰이 취득한 NewCo에는 투입물(물질 A)만 있을 뿐 과정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NewCo의 지분 취득은 사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NewCo에 대한 지분취득은 그 실질 상 무형자산(물질 A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의 법적 형식이 사업의 취득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4.2 물질의 취득과 과학자들의 이전



Background

알파는 현재 임상 1상에 있는 몇몇 후보 약품 물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알파는 초기 단계의 약품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성공 및 시판 승인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된 과학자들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기여해 온 인력들로, 해당 인력들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 지식들은 다른 과학자들로 대체할 수 없다. 알파는 델타에게 약품 후보 물질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해당 물질 연구를 위해 고용되었던 과학자들, 관련 연구장비를 모두 이전하였다.



Relevant guidance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취득일에 산출물이 없는 경우, 취득한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IFRS 3 문단 B12B].

- (1) 취득한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이 취득한 투입물을 산출물로 개발하거나 변환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 (2) 취득한 투입물은 해당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과 그 조직화된 노동력이 산출물로 개발하거나 변환할 수 있는 그 밖의 투입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한 그 밖의 투입물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재화나 용역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적 재산
 - (나)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는 그 밖의 경제적 자원
 - (다) 미래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료나 권리에 대한 접근권

위 (2)의 (가)~(다)에 언급된 투입물의 예로는 기술,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및 광물지분을 포함한다.

델타는 이 거래를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델타가 취득한 활동 및 자산집합은 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과정이 인수되어야 하며, 델타가 취득한 활동에는 산출물이 없으므로 IFRS 3 문단 B12B를 적용하여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평가한다. 델타는 약품 후보 물질에 대한 모든 권리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과학자들)을 취득하였다. 약품 후보물질을 시판 승인 단계로 개발하는데 있어 알파의 기존 연구인력들은 대체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델타는 해당 연구 인력들이 산출물로 개발 가능한 투입물(약품 후보 물질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델타가 취득한 과정은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거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IFRS 3, IE 95~IE 97].

4.3 취득한 IPR&D의 회계처리



Background

제약회사 알파는 여러 제품(약품물질) 후보들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알파의 유일한 활동은 제품 후보 들에 대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인 델타는 알파의 제품 후보, 시험 및 개발 장비에 대한 권리와 함께 알파를 인수하고, 이전에 알파에서 고용 했으며, 취득한 후보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과학자를 고용한다. 델타는 이 거래를 사업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Relevant guidance

회사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IFRS 3 문단 B31]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IFRS 3 문단 18].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한정적인지 비한정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자산이 순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IAS 38 문단 88].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하거나,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수행한다[IAS 38 문단 108].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경제적 내용연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손상의 징후로 간주된다[IAS 38 문단 110]. 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 검사를 수행한다[IAS 38 문단 111].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 시작된다 [IAS 38 문단 97].

델타는 취득한 IPR&D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델타는 취득한 IPR&D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승인된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한 IPR&D는 일반적으로 상각되지 않을 것이다.

취득한 IPR&D는 매년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손상징후가 식별될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검사는 IPR&D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발생한 후속지출은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 연구비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IAS 38의 관련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일반적으로 시판승인을 획득할 때까지), 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식 한다.

IPR&D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및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 및 안내자료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과 감리지적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제약회사와 관련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회계처리 판단 예시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 및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결론과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4 바이오기업의 취득 – 단일 IPR&D 프로젝트



Background

파르마는 바이오텍으로부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임상 3상 물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취득한다. IPR&D에는 관련 시험단계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방법, 공식 규정, 설계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인은 또한 시세에 따른 CRO 계약과 CMO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기타 자산이나 기타 활동은 이전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개정된 모델은 선택적 집중 테스트를 도입하여, 총족될 경우, 추가적인 평가를 요구하지 않다[IFRS 3 문단 B7A].

집중 테스트에서, 회사들은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단일 자산(혹은 유사한 자산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고려한다. 만약 그렇다면,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 이상의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IFRS 3 문단 B7B].

이 약정은 IFRS 3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 따라 사업취득으로 분류되는가?



Solution

아니다. 파르마는 IFRS 3(2018년 개정)에 따라 선택적 집중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고, 이는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파르마는 집중 테스트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하여,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4.5 바이오기업의 취득 – 복수의 IPR&D 프로젝트



Background

파르마는 바이오텍으로부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IPR&D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각각 상당한 공정가치를 갖는), R&D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고위 경영진과 과학자들, 그리고 유형 자산(기업 본사, 연구실 및 연구 장비 포함)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취득한다. 바이오텍은 아직 판매 가능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익을 창출하기 전이다.



Relevant guidance

선택적 집중테스트는 유사한 자산을 통합하는 개념도 포함한다[IFRS 3 문단 B7B]. 그러나, 위험 특성이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무형자산의 집합은 유사하지 않다 [IFRS 3 문단 B7B(6)(b)].

선택적 집중테스트 결과,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사업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IFRS 3의 체계에 따라 거래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IFRS 3 문단 B7].

IFRS 3에서는 사업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일련의 활동들이 산출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취득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IFRS 3 문단 B12B]:

- 과정이 취득한 투입물을 산출물로 개발하거나 변환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함
- 취득한 투입물은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을 포함함, 그리고
- 재화나 용역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적재산,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는 그 밖의 경제적 자원 및 미래 산출물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료나 권리에 대한 접근권과 같은 그 밖의 투입물이 포함됨. 예를 들면 IPR&D가 포함됨

이 약정은 IFRS 3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 따라 사업취득으로 분류되는가?



Solution

그렇다. 파르마는 이 약정을 사업결합이라고 결론내릴 것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혹은 식별가능한 유사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테스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출물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체계에 따라 과정의 취득 여부 및 취득된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조직화된 노동력은 투입물(즉, 노동력, IPR&D 및 유형자산)을 개발하고 산출물로 전환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취득된 것이다.

4.6 취득 – 조건부 대가에 대한 매수자 회계처리



Background

알파는 대규모 제약회사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개발 중인 물질 X는 최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베타는 알파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베타가 인수하는 알파는 사업의 취득으로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한다.

베타는 알파에게 C20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조건부 지급 약정을 포함한다.

- 물질 X가 제2의 시장에서 시판 승인을 받을 경우 C40의 고정대가
- 물질 X의 순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 (향후 10년간 분기별로 지급)



Relevant guidance

IFRS 30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로 인한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IFRS 9 문단 4.2.1 (5)].

IFRS 9의 적용 대상인 조건부 대가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IFRS 3 문단 58 (2)(가)].

베타가 알파에게 지급할 조건부 대가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규제기관의 시판 승인에 대한 고정대가와 향후 로열티의 지급은 모두 IFRS 3에 따른 조건부 대가의 정의를 충족한다. 베타는 알파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취득일에 이를 거래가격의 일부로 보고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베타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규제기간 승인의 시기, 가능성 및 예상되는 로열티 금액에 대한 추정을 포함하여 주요한 계약조건과 시장 참여자들의 가정을 고려해야 한다. 조건부 대가는 조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7 처분 – 조건부 대가에 대한 매도자 회계처리



Background

알파는 100% 종속회사 베타에 대한 지배지분 전체를 20X1년 1월 1일에 처분했다. 베타는 항암 치료에 특화된 제약회사이다. 베타가 개발 중인 물질 X는 시판승인 직전에 있다. 자회사 처분대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계약금(upfront)으로 지급된 현금 C180;
- 베타가 개발 중인 물질 X가 시판승인을 받을 경우의 일회성 조건부 지급액 C40;
- 시판 승인 후 3년 동안 베타의 물질 X의 순매출액의 5%에 대한 로열티 (분기별 지급).

일회성 조건부 지급액인 C40은 시판승인을 획득한 시점에 지급한다. 거래일 기준으로 일회성 조건부 지급액의 공정가치는 C30으로 추정되며, 향후 로열티 지급의 공정가치는 C50으로 추정된다. 거래일 기준 베타의 순자산가치는 C100이다.



Relevant guidance

지배기업이 100%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경우, 종속기업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인수대가의 공정가치를 인식한다[IFRS 10 문단 B98].

조건부 대가를 수령하는 계약은 매도자에게 조건 충족 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제공하므로, 이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IAS 32 문단 11 및 AG8].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FRS 9 문단 5.1.1].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 및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아니라면 해당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IFRS 9 문단 4.1.4].

알파는 조건부 대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는 처분손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령한 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IFRS 9에 따라 분류 및 측정되어야 한다.

조건부 대가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현금흐름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 및 측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알파는 거래일에 C160의 처분이익을 인식할 것이다(현금 C180 + 일회성 조건부 지급액의 공정가치 C30 + 향후 로열티 지급의 공정가치 C50 – 베타의 순자산 가치 C100).

5

수익 – IFRS 15



5.1 계약기간



Background

바이오텍은 파마제약과 10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지역에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파마제약에 이전한다. 지적재산권은 사용권으로 간주되며, 다른 수행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파마제약은 C25의 상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payment)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말 C1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파마제약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시 이전받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바이오텍에 반환해야 한다. 취소 시 파마제약은 지급했던 모든 대가는 환불받지 못한다.



Relevant guidance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계약의 존속 기간(계약기간)에 적용한다[IFRS 15 문단11].

IFRS 15의 목적상 계약기간은 무엇인가?



Solution

위의 시나리오에서 바이오텍은 계약이 조기에 취소될 경우 파마제약이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인 해지 위약금 때문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결론지를 가능성이 높다. 상기 계약에서 파마제약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반환하지만, 이미 지급한 대가에 대해 환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지급금액의 기간이 10년이므로, 바이오텍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이오텍은 사용권 이전시, 계약기간 동안 매기 말에 지급되는 C1의 현재 가치 및 계약금(Upfront payment) C25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에서 취소 시 실질적인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라이선스의 성격, 지급조건(예: 계약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계약취소조건이 포함된 계약조건의 사업상 목적, 계약취소가 계약상 다른 수행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만약 경영진이 계약에 해지권이 있어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실질적인 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계약에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연장선택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5.2 계약변경



Background

가나약품은 다라제약에 종양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R&D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가나약품은 C50의 계약금(Upfront payment)을 수령하였고, 계약기간동안 C30을 한도로 R&D 용역에 대한 비용을 보전 받는다. 가나약품은 라이선스와 R&D 용역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일의 수행의무를 원가 대 원가 방법(종예상원가 대비 발생원가 모형, cost-to-cost model)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양사는 보전받는 R&D 한도를 C40으로 증액시키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가나약품은 C10의 추가 R&D 비용을 부담하고 다라제약으로부터 C10을 추가적으로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계약의 변경사항은 없다.



Relevant guidance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몇몇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는 계약변경을 주문변경(change order), (공사)변경(variation), 수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변경은 서면, 구두 합의,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한다[IFRS 15 문단 18].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IFRS 15 문단 20]:

-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금액)만큼 상승한다.

가나약품은 계약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가나약품은 계약변경(용역제공을 확대하고 거래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기존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 해야 하며, IFRS 15 문단 21에 따라 변경되는 수익을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반영해야 한다.

계약 확장에 대한 가격변경(즉, 제로 마진)은 추가적인 R&D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계약변경은 IFRS 15 문단 20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약품은 기존 계약의 수행의무를 단순하게 확장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약품은 (1) 원가 대 원가(cost-to-cost) 모형의 분모에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진행률을 조정하고, (2) 현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대가만큼 거래가격을 인상하며, (3) 수익을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반영할 것이다.

5.3 협업 약정 회계처리 시 적용범위 고려사항 ①



Background

바이오기업인 바이오텍은 제약회사 파마제약과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게 신약 물질 IP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제조용역을 제공할 것이다. 바이오텍은 C40의 계약금(Ufront payment), 제조용역 제공 시 단위당 생산대가, 그리고 규제당국 승인이 완료 되면 C150의 마일스톤을 수령한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IFRS 15 문단 9]: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성이 높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IFRS 15 부록 A].

이 약정은 IFRS 15의 적용범위 안에 있는가?



Solution

상기 계약이 IFRS 15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바이오텍과 파마제약은 벤더–고객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은 수익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 라이선스와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은 바이오텍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산출물이다. 또한, 두 회사는 계약상 활동으로 인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고객은 쉽게 식별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고객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과 활동(자산 개발 등)의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계약일 때, 거래상대방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계약이 수익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약정은 ‘협업’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수익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 기준서는 고객과의 거래인 경우 협력자나 파트너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5.4 협업 약정 회계처리 시 적용범위 고려사항 ②



Background

A제약은 B제약과 A제약이 보유한 치료물질을 공동개발하기로 하였다. A제약과 B제약은 공동개발을 위한 개발운영위원회(A제약: 2인, B제약: 3인)를 구성할 것이며, A제약은 동 치료물질의 지속적 개발을 수행하고, B제약은 연구개발비 지급 및 개발운영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의 주요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한다.

A제약은 B제약으로부터 치료물질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선급기술료로 C500만을 수령하며, 아래조건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수령한다. 해당 개발비는 지급 받은 후 반환의무가 없다.

- 비임상후보물질도출 연구 개시: C500만
- 비임상 독성시험 CRO 계약 체결시: C700만
- CRO의 독성시험 결과보고서 수령시: C500만

또한,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공동개발 IP는 A제약의 소유이나, 제3자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수익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B제약이 연구개발비금액 회수시까지: 4:6
- B제약이 연구개발비금액 회수이후: 5:5



Relevant guidance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 (IFRS 15 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IFRS 15 문단 6].

이 약정은 IFRS 15의 적용범위 안에 있는가?



Solution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의 상대방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수익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A제약과 B제약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해당사례에서 금전적 지출) 및 효익(IP로부터 발생하는 기술이전 및 실시권 허여수익)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인 B제약은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업이나 동업계약에 따른 관계를 이해하고 계약 전체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인지 식별하여야 한다.

5.5 개발 후 단계의 의무



Background

중견 제약회사인 가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 X에 대해 시판승인을 받았다. 가나약품은 특정 업무(정보 제공, 특히 방어, 마케팅 지원 등)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잘 알려진 개발 후 서비스 그룹인 우리개발사와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개발사는 어떤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약속도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IFRS 15 문단 24].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IFRS 15 문단 25].

우리개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수행의무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Solution

계약에 다양한 유형의 의무에 대한 평가는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판단을 형성할 때, 최소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그 의무는 실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가? 이를 위해서, 의무가 유의적인지, 고객에게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이 유의적인지, 또는 수의인식 관점에서 부수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성격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매한 물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기로 하는 한 계약은 정상적인 고객관계 관리의 일부로서 형식적인 항목으로 볼 수 있으나, 5억 개의 무료 샘플 tablets을 공급하는 계약은 실질적인 의무로 볼 것이다.
- 의무가 별도의 수행의무인가? 의무가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수행의무에 대한 통제를 이전할 때에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계약상 의무	별도의 수행의무가 될 가능성
마케팅 기여	가능성 있음
조사 제품 및 임상시험 물품의 제공	가능성 있음
운영위원회 참여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음
정보 제공	가능성 없음
특히 방어	가능성 없음

계약상 의무가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의 수행의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무는 지출이 요구되는 원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계약에 포함된 보다 유의적인 다른 수행의무와 결합될 필요가 있는 의무일 수도 있다.

5.6 수행의무 구분가능성에 대한 평가(라이선스 및 제조)



Background

제약회사 가나약품과 다라제약은 개발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로 10년 동안 해당 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후 3년간 가나약품이 제품에 대한 제조를 수행하며, 다라제약은 해당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제조는 다른 CMO 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Relevant guidance

제조 용역과 같은 다른 용역과 함께 이전되는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은 별도로 회계처리 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IFRS 15 문단 27]: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다음은 회사의 약속이 다른 약속과 별도로 구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IFRS 15 문단 29]:

-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가나약품은 이 약정에서 라이선스를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고려해야 하는가?



Solution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구별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라이선스 및 관련 제조 용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나약품은 고객이 라이선스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가 제조용역과는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나약품은 두 가지 수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제조 용역은 다른 CMO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라제약은 라이선스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라제약이 계약기간 동안 제품제조를 가나약품과 수행하기로 한 계약에도 동일하다.

다라제약이 획득한 라이선스가 오로지 가나약품의 상품공급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라제약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다라제약이 구입한 것을 판매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불과할 것이며,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5.7 수행의무 구분가능성에 대한 평가(독점판매권 및 제조)



Background

제약회사 가나약품은 아가리라는 나라에서 가나약품이 개발한 새로운 호흡기 약물에 대한 시판 승인을 얻었으며 상업판매를 개시하였다. 가나약품은 벨란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신약을 판매하기 위해 다라제약과 벨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가나약품은 벨란지역의 규제기관 승인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다라제약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며 다라제약을 위해 승인받은 신약을 제조 하여 다라제약에 공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다라제약은 벨란 지역에서의 판매활동을 수행하며, 다라제약은 부여받은 독점판매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Sub-licence 하지 못한다. 가나약품 경영진이 분석한 결과 가나약품이 개발한 제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생산공정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은 가나약품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제조 용역과 같은 다른 용역과 함께 이전되는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은 별도로 회계처리 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IFRS 15 문단 27]: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다음은 회사의 약속이 다른 약속과 별도로 구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IFRS 15 문단 29]:

-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해당 약정에서 가나약품은 라이선스를 제조용역과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가?



Solution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이 구별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라이선스 및 관련 제조 용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나약품은 고객이 라이선스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가 제조용역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다라제약이 가나약품으로부터 획득한 독점판매권은 제조활동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가나약품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가나약품의 제품공급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라제약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다라제약은 라이선스 자체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라이선스는 다라제약이 구입한 것을 판매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불과할 것이며,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5.8 원가보상 회계처리



Background

바이오텍은 전임상 단계의 신약 물질 개발을 위해 파마 제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 신약 물질 IP에 대한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파마제약에 잠재적인 신약 물질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의 완료와 연관된 R&D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바이오텍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R&D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이행되는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였다.

수익은 원가 대 원가(cost-to-cost) 모형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바이오텍은 계약체결 시 C100의 계약금(Upfront payment)을 받고, 발생한 모든 R&D 비용은 100% 보전받기로 하였다.



Relevant guidance

거래가격에는 이미 인식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까지만 변동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의 금액이 포함된다[IFRS 15 문단 56].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함)에만,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44].

기업은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45].

이 약정의 개시시점에, 바이오텍은 R&D에 대한 원가보상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하는가?



Solution

바이오텍은 계약체결 시점에 R&D 보상으로 회수될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추정거래가격에 포함된 R&D 보상액은 원가 대 원가(cost-to-cost) 모형의 진행률 측정 시 분모의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바이오텍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C60의 R&D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계약상 모두 보전받기로 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실제 보상금액은 초기 추정한 금액과 다를 수 있지만, 계약상 파마제약이 발생된 비용의 100%를 바이오텍에 보상해야 한다. 관련 R&D 용역에 대한 수익은 원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바이오텍은 어느 시점에서도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환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텍은 매 보고 기간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에 포함된 R&D 보상액의 추정치를 재측정하여 수정해야 한다.

5.9 조건부 지급이 있는 경우의 변동대가 추정



Background

연구기관 우리연구소는 제약회사인 파마제약과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3상 실험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연구소는 C20의 고정 대가를 수령하며, 계약기간 첫 두달 동안 100명에 대한 임상실험 완료 시 C2의 추가적인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 우리연구소는 파마제약의 후보물질과 유사한 임상실험을 완료한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연구소는 (1) 잠재적인 임상실험 대상 환자수가 많으며 (2) 환자를 선별했던 과거의 경험이 향후 임상실험 수행 시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IFRS 15 문단 50].

기업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기댓값 방법 혹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의 금액을 추정한다[IFRS 15 문단 53].

거래가격에는 이미 인식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까지만 변동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의 금액이 포함된다[IFRS 15 문단 56].

약정 개시시점에 우리연구소는 C2의 조건부 지급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하는가?



Solution

조건부 지급의 2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우리연구소가 처음 두달 동안 10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을 완료하는 경우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할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우리연구소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선별 과정은 우리연구소에 의해 수행되므로, 우발 상황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연구소는 계약개시시점의 거래 대가에 C2의 조건부 지급액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연구소는 변동대가 제약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계약금 금액(C20)이 상대적으로 크고, 우발상황이 두달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고 가정할 때, 전체 C22가 전체 거래가격으로 고려될 것이며, 변동대가의 제약 때문에 수익인식이 유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5.10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된 고객에 대한 수익인식



Background

파마제약은 남유럽 일부국가의 정부 기관에 처방약을 판매한다.

파마제약은 경제 성장 둔화 및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해당기관에 대한 판매대금 지불이 지연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파마제약은 해당기관에 대해 최근 3년에 걸친 매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파마제약과 해당 정부기관은 대금지급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한 적이 없으며, 파마제약은 무조건적으로 대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파마제약이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팩토링 약정은 없다.



Relevant guidance

IFRS 15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할 때,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기준은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계약을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업은 고객의 지급 능력과 의도만을 고려해야 한다.

거래가격에는 이미 인식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까지만 변동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 금액이 포함된다[IFRS 15 문단 56].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가격 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약속한 대가는 변동된다[IFRS 15 문단 52(2)].

IFRS 15기준에 의거하여 파마제약의 경영진은 남유럽 정부기관에 대한 매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파마제약의 경영진은 우선 이 나라에 대한 신규 매출 인식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수익은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인식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진다고 해서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하는 수익 금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채권이 할인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대가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업은 가격 할인(Price concession)을 제공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액의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한 경우 대가는 변동가능하여[IFRS 15 문단 52(2)] 기업은 IFRS 15 문단 53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IFRS 15 문단 56에서 정한 제약조건에 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이 송장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기업은 암묵적 가격 할인(Price concession)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채권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5.11 대량 구매 시 가격 할인



Background

가나약품은 다라제약과 의약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중 다라제약이 특정 누적 구매량 달성을 시, 가나약품은 다라제약에게 연간기준의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할인 금액은 아래 계약 서에 명시된 대로 구매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할인혜택은 전기 구매량에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구매량	할인율	가능성
1~1,000개	0%	15%
1,001~2,000개	2%	60%
2,000개 초과	5%	25%

품목별 단가는 C100이며, 가나약품은 다라제약과의 과거 판매경험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한 결과별 확률값을 계산하였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IFRS 15 문단 50].

변동대가(금액)는 기대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IFRS 15 문단 53].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 56].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잠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IFRS 15 문단 70].

**가나약품은 기말에 고객에게 지불 예정인
할인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



Solution

가나약품은 '기대값' 방법이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가장 잘 예측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가나약품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기대값 방법에 따르면 가나약품은 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 가중 평가에 근거하여 할인율을 2.45% ((0% 할인율×15% 가능성) + (2% 할인율×60% 가능성) + (5% 할인율×25% 가능성))로 추정한다. 각 품목이 1년 동안 출하되어, 가나약품은 C2,45의 수량할인을 반영하여 C97.55의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가나약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매출 추정치를 수정하고, 약정 종료시점에 지급될 금액 및 할인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격조정 시 해당 보고기간에 걸친 출하량의 누적 조정이 포함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가격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의료보험제도를 고객과의 약정으로 간주하는 경우, 상기 지침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5.12 결과 중심의 성과에 따른 지급 약정



Background

보험회사 우산보험사와 제약회사 가나약품은 본인이 신규로 개발하여 허가를 획득한 신약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보상 계획을 경기지역에서 착수하였다. 보상계획에 따르면 우산보험사는 가나약품의 약품을 복용하여 알츠하이머의 치료에 효능을 본 경기지역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약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가나약품의 약품은 이미 승인과정에 임상실험 과정을 거쳤으나, 임상실험에 참여한 환자 모집단은 경기지역의 모집단과는 상이하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IFRS 15 문단 35].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한다[IFRS 15 문단 38].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 56].

성과에 따른 지급약정에서 가나약품은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나?



Solution

가나약품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약품에 대한 판매를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평가하고 있다. 거래 대가는 변동적이며, 가나약품은 계약 개시시점의 총 거래가격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대값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임상실험과 경기지역간 모집단의 차이때문에 거래 대가 추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영(0)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가나약품은 시간이 경과하여 경기지역의 환자들에 대한 경험치 획득으로 해당 치료제에 대한 효능에 대한 예측치가 향상된다면, 각 약품에 대한 기대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조건을 재평가해야 한다.

5.13 제조계약시 약정수율 미달 회계처리



Background

A제약은 B제약과 B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 100EA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배치별로 수율관리기준은 92% 이상으로 유지하되, 미달할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제약이 생산종료 이후 배치에서 생산된 재고의 수율은 90%로 수율관리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회사는 생산된 재고 90EA와 관련된 C900의 제조위수탁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수율미달에 대한 보상금액 C20을 지급하였다.



Relevant guidance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IFRS 15 문단 51].

**배치별 수율미달로 인해 거래처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Solution

의약품의 제조위수탁 계약은 일반적으로 배치별로 수율관련 내용이 존재하며, 계약상 수율을 준수하지 못해 고객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인한 변동대가의 일부로 보아 수익에 반영(차감)한다. 참고로 IFRS 해석위원회는 운송용역을 늦게 수행하거나 취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변동대가로 포함한 사례가 존재한다[2019년 9월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참고].

5.14 제조 계약



Background

고객은 특정 패키지 라벨을 부착한 10만 개의 약품 배치를 제조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약품이 용기에 담겨 라벨이 부착된 후에는 다른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이송할 수 없는 실무적 제한사항이 있다. 또한 계약이 계약사항위반, 및 의무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기업은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IFRS 15 문단 35].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요건)[IFRS 15 문단 44].

기업은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45].

다른 용도로 자산을 전환할 때 경제적 손실이 유의적으로 생긴다면, 다른 용도로 자산을 전환하는 기업의 능력에 실무상 제한이 있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이 유의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자산의 재작업에 유의적으로 원가가 들거나 유의적으로 손실을 보아야만 자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 특유의 규격으로 설계되거나, 먼 지역에 위치하여 자산을 다시 전환하려면 실무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IFRS 15 문단 B8].

공급업체는 언제,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나?



Solution

공급업체는 유통업체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상기 시나리오에서는 계약한 물량의 제조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경영진은 공급업체가 제조하는 약품이 공급업체에게 대체적 용도(즉, 병에 담겨 라벨이 붙여진 약품은 공급업체가 다른 고객에게 판매될 수 없음)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른 용도로 자산을 전환할 때 경제적 손실이 유의적으로 생긴다면, 다른 용도로 자산을 전환하는 기업의 능력에 실무상 제한이 존재한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기 수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계약한 물량의 제조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5.15 개발 서비스 계약



Background

소규모 제약회사 가나약품은 대형 제약회사 다라제약과 5년간 편두통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나약품은 개발 서비스 제공에만 관여하며, 주기적으로 개발 결과를 다라제약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라제약은 기초 자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결과에 대한 독점 권한을 소유한다. 계약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가나약품이 생산한 재공품에 대한 소유권은 다라제약에 있다.

다라제약은 분기별로 환불이 불가한 C25을 20회 지급한다(총 지급액 C500). 대금 지급이 특정기준 달성을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약품은 개발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나약품 경영진은 총 원가를 C400으로 추정한다.

가나약품은 유사한 계약 체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계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 1분기에는 최초 추정치와 유사한 C400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가나약품은 연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연구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IFRS 15 문단 35].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요건)[IFRS 15 문단 44].

기업은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45].

가나약품은 개발을 수행한 대가로 다라제약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나?



Solution

가나약품은 다라제약에게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있으며, 개발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고 판단한다. 다라제약이 계약기간 내내 자산(즉, 재공품)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며, 가나약품은 개발용역을 통해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총비용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나약품은 진행률 측정 방법으로 투입법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한다. 가나약품은 완료시점까지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나약품은 1분기에 C500의 수익, C400의 비용, C100의 이익을 인식하였으며, 미청구된 C250은 가나약품의 재무상태표상 계약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5.16 계약금 및 조건부 지급을 포함한 개발용역



Background

가나약품은 당사를 대신하여 기존물질을 개발해줄 업체로 다라개발을 선정하였다. 다라개발은 시판승인 이후 더 이상 해당 물질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약품은 개발 계약기간의 모든 단계와 시판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물질에 대한 모든 권리(지적 권리 포함)를 보유 한다. 다라개발은 마케팅이나 생산 관련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일스톤에 대한 계획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가나약품은 아래와 같은 환불불가 조건의 대가를 다라개발에게 지급한다:

- a. 계약체결 시 C3
- b. 임상실험 3상 완료 시 C1
- c. 시판승인 시 C2

다라개발은 시판승인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최대 C3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라개발 경영진은 임상 3상 실험 완료 및 시판승인의 가능성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 56].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IFRS 15 문단 35].

다라개발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나?



Solution

경영진은 계약서 검토 결과, 해당계약은 단일 수행의무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며, 기간경과에 따라 통제가 이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라개발이 수령하는 대가는 단일의 고정금액(확정 계약금)과 두개의 조건부 금액(임상실험 및 시판승인에 따라 달라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부 금액은 변동대가이며, 다라개발은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근거로 수익금액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라개발은 우발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건부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발상황의 해소는 다라개발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확정 계약금 수령 시점에 다라개발은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금액에 대한 수익인식은 이연된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된 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한다; 즉, 보고일자의 완료 비율은 해당 날짜까지의 총 거래가격에 반영된다(확정 계약금 및 불확실성이 해소된 변동대가를 포함한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동 대가의 추정치를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해당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은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7 무형자산 매각으로 수령한 상장주식



Background

제약회사 가나약품은 보다 혁신적인 약품개발을 위해 제약그룹 다라제약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가나약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 총 발행주식자본의 5%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다라제약에게 발행한다.
- 가나약품이 신약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출시하면, 다라제약은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상기의 계약은 가나약품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이며, 다라제약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이다. 무형자산 처분과 주식의 이전이 동시에 일어난다.

다라제약의 경영진은 IFRS 9에 따라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한다.



Relevant guidance

IFRS 9: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더한다[IFRS 9 문단 5.1.1].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IFRS 13 따라 결정된다. 금융자산은 각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고 관련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IFRS 9 문단 5.2.1, 5.7.1, 5.7.5].

IFRS 15: 비현금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IFRS 15 문단 66].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 50, 56]. 변동대가 추정치 및 제약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은 각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되어야 한다[IFRS 15 문단 59].

다라제약의 경영진이 받은 주식과 로열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Solution

다라제약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주식을 신규로 인식한다.

처분손익이 인식될 수 있으며, IAS 38에서는 수령한 대가를 IFRS 15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특허권 처분 시 순이익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수령한 대가에는 아래의 두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 취득한 주식은 비현금 대가이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로열티는 변동대가이다. 동 거래는 라이선스가 아닌 지적재산의 판매이므로, 판매 및 사용 기반의 로열티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라제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티의 최소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동 금액이 미래에 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추정치는 거래가격에 포함되며 따라서 처분 손익에도 포함된다. 다라제약은 변동대가에 대한 추정치를 각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하여 수정한다.

Shares

다라제약은 취득한 주식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주식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를 공정가치에 더한다[IFRS 9 문단 5.1.1]. 공정가치는 공시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결과에 기반한다. IFRS 15에서는 비현금대가의 측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주식은 계약 개시일, 라이선스 이전 일자 또는 주식 취득 일자에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일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다. 주식은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며 관련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IFRS 9 문단 5.7.1, 5.7.5].

5.18 라이선스 계약에서 수령한 거래 대가



Background

제약회사 가나약품과 다라제약은 가나약품의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 제조를 위해 다라제약의 노하우와 기술을 도입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나약품은 당사의 시설에서 10년 동안 다라제약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라제약은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 대가로 C3의 환불불가 조건의 계약금 (Upfront payment)을 수령하며, 시판 후 에이즈 치료제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Relevant guidance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은 구별 가능한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이다.

IFRS 15는 두 종류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있다: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접근권; 한 시점에 이전되는 사용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은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IFRS 15 문단 B58]:

-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1)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인식된다[IFRS 15 문단 B61].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 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또는 일어난 대로) 인식한다[IFRS 15 문단 B63]:

- 후속 판매나 사용
-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다라제약은 노하우와 기술의 라이선스 부여 대가로 수취한 환불불가 조건의 계약금과 매출발생분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다라제약은 상기의 라이선스 제공 계약이 단일의 수행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라제약은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공하였으며, 가나약품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가나약품에게 허가된 지적재산은 상당한 독립적 기능(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다라제약은 그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에는 고정요소(계약금, Up-front payment) 및 변동요소(로열티)가 포함된다.

계약금은 확정금액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인식되는데, 이는 가나약품이 기초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획득하는 시점이다.

다라제약이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로 수령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와 같은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다라제약의 유사거래경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로열티는 가나약품이 판매하기 전까지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나약품의 회계처리방법은 Solution 1.19를 참고한다.

5.19 파이프라인의 적응증 추가 적용 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Background

제약회사인 A사는 단일의 적응증에 대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B사에게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A사는 이 파이프라인이 다른 적응증에도 효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추가 적응증에도 사용 할 수 있는 옵션을 B사에게 제공하였다.



Relevant guidance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IFRS 15 문단 26]:

(10)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가 생기게 한다.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업은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B40].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고객에게 있다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 선택권은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기업이 고객에게 마케팅 제안을 한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추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IFRS 15 문단 B41].

문단 74에서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 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한다. 그 추정에는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받을 할인을 반영하되, 다음 모두에 대해 조정한다[IFRS 15 문단 B42]:

(1)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할인액

(2) 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

A사가 B사에게 제공한 옵션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A사는 B사에게 제공되는 옵션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가 생기게 되며, 그 경우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회사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옵션이 B사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에는 두 가지 수행 의무가 있다. A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단일의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향후 추가 적응증에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이다. 이 계약에서는 A사는 각 이행의무의 독립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라이선스와 미래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에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B사의 옵션에 대한 독립된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 A사는 이를 추정해야 한다. 그 추정치는 B사가 옵션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및 옵션의 행사 가능성을 조정해야 한다. 옵션에 배분된 금액은 향후 추가 라이선스가 B사로 이전되거나 옵션이 만료될 때 인식된다.

반면, 추가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해당 옵션은 B사에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회사가 고객에게 마케팅 제안을 한 것이므로, A사는 최초 계약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지 않고, B사가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5.20 최초 매출발생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



Background

20x7년 6월 가나약품은 다라제약에게 지적재산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적재산은 다라제약이 개발예정인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라이선스는 사용권에 해당하고, 계약 개시시점에 이전되며 다른 수행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나약품은 다음을 수취하게 된다:

- C50의 계약금(Up-front payment)
- 다라제약의 최초 상업적 판매 성공 시 C30의 마일스톤

20x8년 12월, 해당 약품은 식약처 승인을 득하고, 최초 상업적 판매는 20x9년 2월에 발생했다. 20x8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적 판매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한다.



Relevant guidance

IFRS 15 문단 56–59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IFRS 15 문단 B63]:

- a. 후속 판매나 사용
- b.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가나약품은 최초 상업적 판매에 따른 C30의 마일스톤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C30의 마일스톤 수령여부는 다라제약의 약품 판매 여부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대가로 수령한 판매 및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열티 적용 예외 조항에 따르면, 해당 마일스톤은 (1) 후속 판매나 사용의 발생 및 (2) 판매기준 로열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적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한다.

마일스톤은 최초의 상업적 판매가 일어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2019년 2월). 마일스톤 금액이 중요한 경우, 20x8년 12월 재무제표에 관련 금액 및 회계정책에 대해 공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5.21 지배적인 지적재산 라이선스



Background

파마제약은 허가를 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10년 동안 고객에게 라이선스한다. 파마제약은 또한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교육 및 제조기술 이전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과정이 특이하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은 고객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파마제약은 라이선스와 용역제공이 서로 구별된다고 판단하였다. 동 계약에서 파마제약의 보상은 고객이 약품 판매 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수령하는 로열티가 유일하다.



Relevant guidance

IFRS 15 문단 56–59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IFRS 15 문단 B63]:

- 후속 판매나 사용
-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판매 및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 로열티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a)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된다. (b)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는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이다(예: 로열티가 관련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 그 라이선스에 고객이 더 유의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는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일 수 있다)[IFRS 15 문단 63A].

판매 및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사항이 동 계약에 적용되나?



Solution

그렇다.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내용이 계약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에 판매 및 사용기준 로열티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고객은 3개월 동안의 교육과 제조기술이전 용역보다 라이선스에 유의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파마제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출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고객의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22 라이선스 이용자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의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



Background

바이오텍은 신드롬큐 신약에 대한 임상 2상 실험을 성공했다. 바이오텍과 대형 제약회사인 파마제약은 다음의 계약조건에 합의하였다:

- 바이오텍은 신드롬큐에 대한 치료제를 미국에서 제조, 판매 및 시판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파마제약에 부여한다. 바이오텍은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과 기초 지적재산을 보유한다.
- 파마제약은 미국에서의 시판승인을 받기 위해 바이오텍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 3상 실험을 수행하며,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 의약품의 개발을 감독하는 개발위원회가 있으며, 개발위원회는 의약품에 관한 모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바이오텍이 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는 없지만, 참석 권한은 있으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으로부터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한다.
- 바이오텍은 미국 외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제3의 제약회사에 이러한 권리를 라이선스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파마제약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다:

- 계약 체결 시 C10의 계약금
- 규제당국의 시판승인 시 C20의 마일스톤
-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
- 연간 매출액이 C500을 초과하는 첫 해에 C20의 마일스톤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대금 지급 이후시점에는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IFRS 15은 두 종류의 라이선스를 식별하고 있다: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접근권; 한 시점에 이전되는 사용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은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IFRS 15 문단 B58]:

- a.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 b.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1)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 c.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인식된다[IFRS 15 문단 B61].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56]. 이 규칙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 a. 후속 판매나 사용
- b.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IFRS 15 문단 B63].

바이오텍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Solution

바이오텍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은 라이선스–아웃을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스–아웃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파마제약이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시판승인을 받아 약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으로부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텍이 제공하는 보증은 계약에 따른 약속된 재화나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이오텍은 개발위원회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마제약의 수행의무가 아니다.

라이선스–아웃에 대한 회계처리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였고, 부여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파마제약에게 허가된 지적재산은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being a patented drug formula)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텍은 그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개발위원회에 바이오텍이 참석하는 것은 특허권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에는 단일의 고정금액(확정 계약금)과 두개의 조건부 금액(단계별 마일스톤 및 로열티)이 포함되어 있다.

변동대가

계약이 체결되면, 바이오텍은 조건부 시판승인에 기반한 단계별 지급에 대한 대가를 추정하며,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금액은 0이라고 판단한다.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금액의 추정 방법은 결과에 대한 최선의 예측치로 간주되는데, 그 결과는 이원화(시판승인이 통과되거나 그렇지 않거나)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거래 금액은 계약금이며, 한 시점에 인식된다.

거래가격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 되어야 한다. 이미 인식한 수익을 미래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바이오텍은 시판승인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을 총 추정 거래가격에 포함시킨다. 시판승인 전에 마일스톤 금액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당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될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 거래가격이 고객에게 이미 부여된 라이선스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텍은 지적재산 라이선스와 교환하여 받은 판매기준 로열티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와 관련된 변동대가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바이오텍이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로열티는 파마제약이 미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이전까지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마일스톤은 연간 판매조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수취하지 않는다. 바이오텍은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을 실질적인 판매기준 로열티로 간주하는데, 이는 마일스톤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로열티에 대한 예외조항에 따라 연간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지급되는 마일스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만일 바이오텍이 신드롬큐에 대한 치료제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더라면, 처분되는 미국 지역에서의 권리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제거되어야 한다(Solution 1.17 참고).

파마제약의 회계처리는 Solution 1.21을 참고 한다.

5.23 라이선스 제공자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의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



Background

바이오텍은 임상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파마제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바이오텍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 및 시판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파마제약에 부여한다.
- 바이오텍은 임상실험 3상에 대한 수행 및 시판승인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 바이오텍은 파마제약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으로부터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한다.
- 바이오텍은 의약품의 제조, 판매 또는 마케팅에 관여하지 않는다.

동 계약에 따라 파마제약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다:

- C10의 계약금
- 임상실험 3상 성공 시 C20의 마일스톤
- 규제당국의 시판승인 시 C10의 마일스톤
-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로열티

동일한 개발단계의 유사한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23%~26% 범위에 있다.



Relevant guidance

연구개발과 같은 기타 서비스와 함께 이전되는 라이선스는 먼저 라이선스가 구별되어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구별되는 재화 및 용역은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IFRS 15 문단 27]:

- a.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b.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약속이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IFRS 15 문단 29]:

- a.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 b.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 c.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IFRS 15는 두가지 종류의 라이선스, 즉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접근권 및 한 시점에 이전되는 사용권을 식별하고 있다[IFRS 15 문단 B58].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IFRS 15 문단 56]. 이 규칙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IFRS 15 문단 B63]:

- a. 후속 판매나 사용
- b.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이 예외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적용되거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가 로열티와 관련된 주요 항목이다.

바이오텍은 상기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나?

Solution

바이오텍은 당사의 지적재산을 파마제약에 라이선스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라이선스-아웃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파마제약은 바이오텍의 고객으로 볼 수 있다.

수행의무의 식별

바이오텍은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마제약에게 허가된 지적재산은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being a patented drug formula)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텍은 그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파마제약은 라이선스 및 개발용역으로부터 각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와 개발 서비스는 서로 구별될 수 있다. 바이오텍은 개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라이선스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다음 개발단계는 임상실험 3상으로, 동일한 개발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다. 바이오텍은 개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파마제약은 다른 제공자로부터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선스와 개발용역은 분리하여 식별가능하다. 이는 용역의 제공이 원래의 라이선스와 통합되지 않고(수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와 개발용역은 상호 관련성이 높거나 상호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텍은 두 가지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거래가격의 측정 및 배분

계약에 대한 대가에는 단일의 고정금액(확정 계약금)과 두개의 조건부 금액(단계별 마일스톤 및 로열티)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개시일에는 고정대가만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두 가지의 마일스톤 (3상 실험완료 및 규제당국의 시판승인)에 대한 변동대가는 발생가능성 및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개시시점에 0으로 결정된다.

바이오텍은 변동대가 배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바이오텍은 동 계약에 따라 판매기준 로열티는 지적재산의 상업적 성공과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IFRS 15 문단 85(a)]. 이는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목적과도 일치한다[IFRS 15 문단 85(b)].

바이오텍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과 바이오텍이 수령하는 계약금만으로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일스톤이 개발용역 및 라이선스의 두가지 수행의무 모두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총 거래가격은 라이선스와 개발용역에 배분되며, 이들의 추정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바이오텍은 매 보고기간 말에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가격의 변동은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최초에 결정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두가지 수행의무에 배분된다.

Recognising revenue

Solution 5.22에 설명된 대로 라이선스의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되는데, 이 시점은 파마제약이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을 때이다. 개발용역에 대한 통제는 Solution 5.15에 설명된 근거와 유사하게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바이오텍은 적절한 진행률 측정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로열티는 후속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파마제약의 회계처리방법은 Solution 1.22를 참고한다.

5.24 신규장비 판매시 할인옵션



Background

회사 A는 반품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의료기기를 회사 B에 판매하였다. 회사 A는 현재 모델을 판매하고 6개 월 내에 신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 B가 현재 모델을 구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신규 모델 출시 시 40% 할인을 제공한다. 경영진은 아직 신규 모델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가 생기게 한다(예: 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지역이나 시장의 해당 고객층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업은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IFRS 15 문단 B40].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한다. 그 추정에는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받을 할인을 반영해야 한다. 이 할인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할인과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IFRS 15 문단 B42].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IFRS 15 문단 79].

- (1)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하여 그 시장에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비슷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경쟁자의 가격을 참조하고 그 가격에 기업의 원가와 이윤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 (2)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더할 수 있다.
- (3) 잔여접근법–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잔여접근법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문단 78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

회사 A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가?



Solution

이 할인옵션은 신규 재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을 제공하므로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고 결론내린다. 따라서 회사 A는 의료기기와 할인옵션의 독립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 A가 현재 모델을 C100에 판매하고 신규 모델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 플러스” 마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예상 판매 가격이 C110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회사 A는 현재 모델의 판매에서 이연할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예상 판매 가격 C110에 40% 할인을 곱한 다음, 이 금액을 두 수행 의무 간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IFRS 15 문단 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5 의료장비 제조업체 품질보증 – 연장보증 구매옵션



Background

의료 기기 제조업체인 회사는 표준 판매 계약 조건의 일부로 표준 제품 보증을 포함한다. 표준 제품 보증은 특정 기간 동안 제조업체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고객에게 원래의 표준 보증의 적용 범위 외에 연장된 보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제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합의된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 유지 관리 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Relevant guidance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IFRS 15 문단 B28].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예: 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IFRS 15 문단 B29].

**연장된 보증이나 제품 유지 관리 계약은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가?**



Solution

그렇다. 별도로 판매되는 연장된 제품 보증 및 제품 유지 관리 계약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IFRS 15에 따른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회사는 IFRS 15 문단 73~86의 지침에 따라 수행의무인 제품과 서비스에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한다.

5.26 의료장비 제조업체 품질보증비용 – 제조사 청구



Background

회사는 다양한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단일 의료 장비 솔루션으로 통합 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한다. 회사는 IFRS 15에 따라 장비 판매를 회계처리 하며,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신이 본인이라고 결론지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에 결함이 없고 게시된 사양에 따라 작동함을 보장하는 표준 보증을 정상적인 판매 조건의 일부로 제공한다. 보증은 별도로 판매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장비 판매에는 제조업체의 표준 보증이 포함되므로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조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제조업체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다. 회사는 해당 장비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 대해 회사가 계약상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evant guidance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IAS 37 문단 53].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IAS 37 문단 54].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IAS 37 문단 55].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IAS 37 문단 56].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IAS 37 문단 57].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IFRS 15 문단 B28].

회사는 고객에 대한 표준 보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Solution

회사는 IAS 37 문단 56에 따라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궁극적으로 표준 보증 청구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는 계약 판매 조건에 따라 장비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 대해 회사가 계약 상 보증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제조업체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5.27 의료장비 판매시 설치 의무 – 구별되는 수행의무



Background

의료장비 회사A는 고객으로부터 장비 구매 및 설치를 요청받았다. 회사 A는 장비를 고객 사이트로 납품한 직후 고객 사이트에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장비를 제작하는 동안 수행을 원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으며, 반품은 예상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일반적으로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진다. 장비 및 설치 용역에 대한 고정가격(즉, 변동대가나 할인액은 없음)은 C5000이다. 설치 용역은 비교적 단순하며 회사 A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객은 장비 그 자체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예: 다른 회사도 설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 A는 계약이 고객에 대한 장비의 인도 및 설치용역이라는 두 개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포함한다고 결론내렸다.

장비 및 설치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C450과 C1500이다.



Relevant guidance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IFRS 15 문단 22]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은 문단 76–80에 따라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다만 문단 81–83(할인액의 배분)과 문단 84–86(변동금액이 포함된 대가의 배분)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IFRS 15 문단 74].

회사 A는 장비 및 설치용역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Solution

회사 A는 우선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총 거래 가격인 C500을 배분해야 한다. 장비공급과 설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C450 및 C150)을 기반으로 배분하면 장비공급 수행의무에 C375(75%)가 배분되고 설치용역 수행의무에 C125(25%)가 배분된다.

장비공급 수행의무에 배분된 C375는 문단 35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장비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설치용역은 고객 사이트에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아 설치용역 수행의무에 배분된 C125는 회사 A가 용역을 제공하는 두 달 동안 회사 A의 설치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방식에 따라 적절한 진행률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28 장기이행보증금의 수익인식 – 환불불가조건



Background

제약회사인 A사는 고객인 B사와 10년간 A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제품 상업화 승인 여부에 따른 기술수출의 우선협상 권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기술수출 계약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대가로 B사로부터 장기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계약기간 내 기술수출 계약의 체결시 받게 될 대금을 장기이행보증금으로 상계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남은 장기이행보증금은 B사에 환불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계약부채 :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IFRS 15 부록 A]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IFRS 15 문단 22].

-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IFRS 15 문단 26].

(10)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IFRS 15 문단 31].

A사가 장기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는?



Solution

A사가 수령한 장기이행보증금은 B사에게 향후 A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제품 상업화 승인에 따른 기술수출 시 우선협상의 권리 및 기술수출계약 체결시 수행의무 이전의 대가다. A사는 B사에게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우선협상 권리 및 기술수출계약 체결의 수행 의무가 존재하므로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이행보증금은 계약부채로 기술수출계약 체결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기술수출계약 체결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5.29 장기이행보증금의 수익인식 – 환불조건



Background

제약회사인 A사는 고객인 B사와 10년간 A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제품 상업화 승인 여부에 따른 기술수출의 우선협상 권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기술수출 계약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대가로 B사로부터 장기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계약기간 내 기술수출 계약의 체결시 받게 될 대금을 장기이행보증금으로 상계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남은 장기이행보증금은 B사에 환불된다.



Relevant guidance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IAS 32 문단 11].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IFRS 9 문단 B5.1.1].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IFRS 15 문단 22].

-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용역 제공자는 계약을 준비하기(set up) 위해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에게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 준비 활동은 수행의무가 아니다[IFRS 15 문단 25].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IFRS 15 문단 27].

-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A사가 장기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금액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의 수익인식 시기는 언제인가?

Solution

A사가 수령한 장기이행보증금은 받은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를 B사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A사는 B사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향후 발생할 기술수출계약에 대한 대금과 상계해야 하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행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는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 계약 상 별도의 용역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계약 체결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기술수출계약 체결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행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계약의 우선협상 계약 체결에 따른 기회손실을 보장하고, B사의 이행의 보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기술수출계약의 계약에 선행되는 별도의 용역이 식별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미래 기술수출계약과 서로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술수출계약 체결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의무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5.30 약가인하 관련 회계처리



Background

정부는 법령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고시할 수 있으며, 20X3년 4월 1일부로 A제약의 AA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였다. A제약은 이러한 정부의 권고안을 수령할 예정이며, A제약은 기존 약가인하 발생시와 동일하게 약가인하일 이전 6개월전까지 납품했던 제품 중 미판매재고에 대해서 가격을 소급하여 조정해줄 계획이다.



Relevant guidance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IFRS 15 문단51].

약가인하전 판매한 제품 중 가격소급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Solution

A제약은 20x3년 4월 1일부로 정부의 약가금액 평가결과를 가격에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약가인하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 건에 대해서는 A제약의 기존 사업관행 및 경영방침에 따라 매출가격 소급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A제약은 이러한 고객의 정당한 기대를 변동대가로 보아 수익에 반영(차감)한다.

5.31 CSO 지급수수료 회계처리



Background

A제약은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회사인 B사와 A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워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B사는 A제약이 거래하지 않는 병원, 의원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처방이 발생하면 약국은 도매상 또는 직거래를 통해 A제약의 제품을 공급 받는다. B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처방금액에 약정 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B사는 해당월의 처방실적을 집계 후 익월에 약정된 수수료를 A사에 청구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IFRS 15 문단 51].

A사는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하는가? 또한 수수료의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Solution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고객인 도매상, 약국에게 이전되지 않고, CSO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익에 반영할 변동대가가 아니다. 또한 수수료의 비용인식시점은 CSO의 청구시점이 아닌 처방이 발생한 월에 약정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32 반품에 대한 환불부채 회계처리



Background

A제약은 약국 및 도매상, 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다. 계약서상 반품관련 조항은 없으나, 회사 및 동종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고객의 반품요청시 반품을 수용하고 있으며, 반품금액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A제약은 반품으로 수령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반품재고 수령시 전액 폐기처리하고 있다.



Relevant guidance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IFRS 15 문단 55].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 (1) 기업이 받을 권리(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 (2) 환불부채를 인식
- (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IFRS 15 문단 B21]

A제약은 이 거래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Solution

권리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암묵적일 수도 있다. 암묵적인 권리(권리를 판매 과정에서 고객과 맺은 약속이나 진술, 법정 요구사항 또는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관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A제약과 고객인 약국, 도매상, 병원 등과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반품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반품 관련하여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A제약은 다른 변동대가와 같은 방법으로 예상반품을 추정하여 반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 수익을 인식하고, 반품추정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각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추정 거래가격을 수정한다. 한편, A제약은 제품회수시 폐기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자산에 손상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매출원가 조정은 없을 것이다.

6

표시 및 공시 사항



6.1 자산화 개발원가 표시



Background

파마제약은 허가받아 시판 중인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다. 개발비는 잔여 특허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Relevant guidance

매출원가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물류원가와 같은 다른 금액들도 포함될 수 있다[IAS 2 문단 38].

손익계산서 양식 ‘비용의 성격별 분류’ 방식에 기초한 비용 분석에 따르면, 기업은 당기의 재고자산 순변동액과 함께 비용으로 인식한 원재료 및 소모품, 노무원가와 기타원가를 공시한다[IAS 2 문단 39].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따라 원가는 판매된 재화의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IAS 1 문단 103].

개발비 상각비는 파마제약 손익계산서 어디에 분류해야하나?



Solution

파마제약은 당뇨 치료제를 시장 출시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그 가치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개발비의 상각은 손익계산서 ‘비용의 기능별 분류’ 방식에 따라 매출원가로 분류해야 한다. 상각비는 손익계산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방식에 따라 무형자산 상각비로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에 사용된 지적재산의 원가(로열티 및 무형자산 상각)는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해당 제품과 일관되게 분류해야 한다.

6.2 판촉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Background

파마제약은 신장병의 장기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였다. 이 회사의 홍보팀은 신약에 대한 TV 광고, 컨퍼런스 참석, 의사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판촉활동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Relevant guidance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일컫는다[IAS 38 문단 8].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되고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표시되나?



Solution

광고 및 판매촉진비와 관련된 지출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 모두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한다[IAS 38 문단 69(3)].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 표시는 경영진이 선택한 비용의 분류방식(즉, 성격별 분류 또는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격별 분류의 경우, 판매촉진비는 광고 및 판매촉진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보다 상세한 분류가 제공될 수도 있다. 기능별 분류의 경우, 판매촉진비용은 판매 및 마케팅비용에 포함되고 주석에 추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

6.3 광고비와 판촉비



Background

가나약품은 최근 당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경쟁 제품을 비교분석하는 연구활동을 완료했다.

연구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되어, 가나약품은 신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투자를 개시했다. 이 캠페인은 20x5년 1월 국제 알츠하이머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나약품은 또한 20x5년 2월에 방영될 소비자 직접 홍보 방식(DTC)의 TV 광고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소비자 직접 홍보 방식의 인터넷 광고도 2월에 개시될 예정이며, 알츠하이머 사이트에 ‘연결 클릭(click-through)’ 방식으로 제공된다.



Relevant guidance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로는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이 있다[IAS 38 문단 69].

**캠페인 개최 전의 광고 및 판매촉진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Solution

광고 및 판매촉진비와 관련된 지출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초래하더라도 광고촉진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 모두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 계정으로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한다[IAS 38 문단 69(3)].

TV,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 등 마케팅 캠페인 및 관련 활동을 개발하고 제작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해야 한다. TV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광고가 20x5년에 처음 방송되는 시점에 즉시 비용처리한다. 인터넷 사이트 방문 비용역시 20x5년의 클릭회수를 기준으로 즉시 비용처리한다.

6.4 무상샘플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Background

우리연구소는 자사에서 신규로 출시된 진통제의 인지도를 병원 내에서 높이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우리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방문판매와 병원 대상 설명회에서 진통제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



Relevant guidance

기업은 비용을 성격별 분류/매출원가법에 따라 분류한다[IAS 1 문단 102, 103].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로는 매출원가, 유통 활동 또는 관리 활동이 있다[IAS 1 문단 103].

신약 홍보를 위해 제공한 무료 샘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회계처리 되나?



Solution

무료로 배포되며 판매활동과 관련이 없는 약품원가는 마케팅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우리연구소는 방문판매와 병원설명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 약품 샘플에 대한 비용을 마케팅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약품원가는 약품이 샘플 제품으로 포장된 경우 마케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6.5 공동 판촉비(Co-promotion royalties)의 분류



Background

가나약품은 다리제약의 판매 인력을 활용해 미국에서 자사의 약품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을 체결하였다. 코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가나약품은 다리제약에게 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로 순매출액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동 협약은 두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계약이다.



Relevant guidance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IAS 1 문단 97].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순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IAS 1 문단 99].

가나약품은 공동판촉비(Co-promotion)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Solution

비용이 기능별로 분류되어 표시되는 경우, 가나약품은 공동판촉비를 마케팅 및 판매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성격별 분류의 경우, 제3자 마케팅비용으로 분류하여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6.6 내부 연구개발부서의 부문별 보고



Background

제약회사 가나약품은 세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가나약품은 3개 사업부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고객에게는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의 운영 결과는 기업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함께 부문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영목적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연구개발활동 포함),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부문 관리자 3명이 있다.



Relevant guidance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기업의 구성 단위를 말한다.

-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IFRS 8 문단 5].

일반적으로 영업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는 부문관리자가 있다[IFRS 8 문단 9].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관리자들이 책임지는 두 조 이상의 중복되는 구성 단위의 영업성과를 검토하는 경우, 어느 조의 구성 단위가 재무제표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업 활동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영업 부문을 결정해야 한다[IFRS 8 문단 10].

연구개발활동이 별도의 부문으로 보고되어야 하나?



Solution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중복되는 정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부문관리자는 적절한 영업 부문을 결정하는데 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질적요소에는 영업 부문이 IFRS 8의 핵심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식별된 영업 부문이 실제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지, 식별된 영업 부문이 재무제표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업 부문의 활동, 재무성과, 사업 환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나약품의 연구개발활동은 별도의 영업 부문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영업 부문에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부문의 영업활동, 재무성과, 예측 또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부문관리자가 있다. 영업부문은 재무제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약회사의 사업 활동, 재무성과, 사업환경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부문은 IFRS 8의 핵심 원칙과 일치한다.

6.7 연구개발용역의 부문 보고



Background

가나약품은 다른 실험실 및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 실의 수익 중 약 65%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창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기관의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한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부문 성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설의 영업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Relevant guidance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 단위를 말한다.

-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IFRS 8 문단 5].

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IFRS 8 문단 13]:

- 부문수익(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과 부문 간 매출이나 이전을 포함)이 모든 영업부문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 (i)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 (ii) 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합계액의 절대치
- 부문 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가나약품은 연구개발활동을 사업 부문으로
보고해야하나?**



Solution

가나약품의 경영진은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을 별도의 보고 부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 활동은 총 매출의 백분율에 대한 양적기준을 충족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 부문에 대한 기준을 만족한다.

6.8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 시 연구개발의 공시사항



Background

가나약품은 여러 개의 보고 부문으로 구성된 제약회사이다. 생명공학 부문 비용의 18%는 연구개발과 관련 있으며, 모든 부문 기본적 지출의 30%는 개발비로 자산화하고 있다.

자산화되고 비용처리된 연구개발활동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 부문별로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Relevant guidance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 단위를 말한다.

- a.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b.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c.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IFRS 8 문단 5].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 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각 보고 부문별로 중요한 비용을 공시해야 한다[IFRS 8 문단 23(6)].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 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기업은 비유동 자산을 공시해야 한다[IFRS 8 문단 24(2)].

가나약품은 연구개발비와 기본적 지출을 보고 부문에 별도로 보고해야하니?



Solution

당해 연도에 자산화 및 비용처리된 연구개발활동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모든 보고 부문별로 공시되어야 한다.

7

Lease - IFRS 16



7.1 대체권



Background

의료기기업체인 아풀로사는 스타병원과 5년간의 의료 영상 스캐너 공급 및 의료 영상 소모품(카트리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아풀로사는 아풀로사의 소모품을 사용해야 하는 스타병원의 부지에 의료 영상 스캐너를 설치한다.

스캐너는 스타병원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가 실행 가능하도록 맞춤 제작되었으며 스타병원의 직원이 스캐너 작동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 아풀로사는 스타병원에 스캐너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아풀로사는 스타병원의 소모품 구매로 스캐너의 원가를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캐너의 법적 소유권은 아풀로사에 있으며 계약에 따라 아풀로사는 스캐너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인하여 스타병원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계약에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동 중지 시간이 발생할 경우 유의적인 벌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풀로사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풀로사는 유지보수 용역도 제공한다.



Relevant guidance

식별된 자산이 있고,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IFRS 16 문단 9].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IFRS 16 문단 B13].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IFRS 16 문단 B14].

고객이 식별된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모두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은 식별된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IFRS 16 문단 B9].

계약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가?



Solution

그렇다. 계약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 스캐너가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타병원에 스캐너가 설치되어있고, 맞춤 제작되었으므로 이는 암묵적으로 식별되는 자산이다.

아풀로사는 법적인 대체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비를 대체할 경우 스타병원의 유의적인 업무 중단과 가동중지시의 벌금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유지보수 또는 고장으로 인한 대체는 실질적인 대체권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계약에는 식별되는 자산, 즉 스캐너를 포함한다.

스타병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 기간 동안 장비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보유한다.

- (1) 스타병원은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장비에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별되는 장비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다.
- (2) 스타병원은 사용기간 동안 스타병원의 직원이 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비의 작동 시기와 방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다.

7.2 약정 내 구성 요소의 식별: 실험실 시설



Background

바이오텍은 토지, 건물, 그리고 실험실 장비로 구성된 생명공학 연구소 시설을 임차한다. 바이오텍의 토지사용권은 건물사용권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바이오텍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시설을 리스하며, 토지와 건물의 임차 없이 연구소 시설만 임차할 수 없다. 임대인은 실험실 장비를 별도로 임대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다른 공급업체는 유사한 시설은 임대하거나 판매한다. 실험실 장비는 다른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리스료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된다.

- (1) 토지, 건물, 실험실 장비에 대한 고정 리스료
- (2) 재산세 및 보험에 대한 고정금액
- (3) 실험실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정금액
- (4)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위한 고정금액

바이오텍은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Relevant guidance

계약은 공급자의 복수의 수행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요소로 구성된 계약에서 회사는 리스의 정의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별도 리스요소를 식별하고 회계 처리해야 한다[IFRS 16 문단 12].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약정에 둘 이상의 리스요소가 포함된다[IFRS 16 문단 B32]:

- (1)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2) 계약에서 그 기초자산은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비리스요소를 식별할 때 회사는 재화나 용역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IFRS 16 문단 B33].

검토 결과 별도의 구성요소가 식별되고 IFRS16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각 구성요소에 대가를 배분해야 한다[IFRS 16 문단 12].

이 계약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Solution

계약의 리스요소는 토지를 포함한 건물과 실험실 장비다. 실험실 장비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다른 연구소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아 별도의 리스요소이다. (이 사례에서는 모든 실험실 장비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 비리스요소는 토지 및 건물의 관리와 실험실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이다.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재산세 및 보험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임차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별도 비리스요소로 식별되지 않는다. 고정금액의 재산세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총 리스료는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된 요소에 배분된다. 배분되는 구성요소는 두개의 리스요소(토지 및 건물의 임차, 실험실 장비의 임차)와 식별된 비리스요소(토지 및 건물의 관리와 실험실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이다.

7.3 리스분류와 최초 및 후속 측정



Background

제약 회사인 MDC는 병원의 소프트웨어에 맞춤화되어 설계된 특수 의료 영상 장비를 병원에 임대한다. 병원 장비의 연식과 맞춤화를 고려할 때 MDC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장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원가가 소요된다. 비용은 그러한 판매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한다. 해당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하는 장비 리스라고 가정한다.

- 리스기간: 4.5년(갱신 옵션 없음)
- 구매옵션: 없음
- 리스 현재가지: C200,000
- 리스자산 공정가치: C210,000
- 경제내용연수: 5년
- 기초자산의 소유권: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리스제공자에게 있음



Relevant guidance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IFRS 16 문단 62].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 (개별 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IFRS 16 문단 63].

- a.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b.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 c.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 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 d.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e.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MDC(리스제공자)는 어떻게 리스를
분류해야하나?**



Solution

MDC는 계약을 평가하고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병원은 남은 경제적 내용연수의 90%(리스기간 4.5년/잔여 경제적 내용연수 5년) 동안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리스료 총액의 현재가치는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95%(C200,000/C210,000)에 해당한다. 또한, 기초자산은 특수하다. 장비는 맞춤 제작되고 다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데에 유의적인 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MDC에 리스자산의 대체용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7.4 독점공급계약 – 사용통제권



Background

카라바지오는 숙련된 제약 제조업체인 S사와 미국에서 잘 정립된 두개의 약품물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2년 간의 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카라바지오와 S사는 공동운영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며, 자문 자격으로 카라바지오가 S사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S사가 제기한 모든 질의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제조설비에 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S사는 지정된 설비를 대체할 권리가 없다. S사가 공급해야 하는 2개의 약품물질의 월별 수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S사는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산라인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카라바지오는 약정기간 동안 명시된 수량을 해 수정할 수 없다. S사는 제조설비를 운영하며, 명시된 수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약품물질을 생산할지를 포함하여 모든 제조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트거나 리스트를 포함한다. 기업은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트인지, 계약이 리스트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IFRS 16 문단 9~11].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IFRS 16의 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다음의 권리를 갖는지 확인한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 참조);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 참조)

S사와의 계약이 리스트를 포함하는가?



Solution

아니다. 자산이 식별되더라도, 카라바지오는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 통제권이 없으므로 동 계약은 리스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제조설비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S사는 계약을 이행할 단 하나의 제조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식별된다. 그러나, 카라바지오는 제조설비의 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사용기간 동안 제조설비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 이는 S사에게 사용기간 중 설비의 운영 방법과 시기, 두 약품물질의 상세한 생산일정, 배치크기 등 모든 운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사는 사용기간에 식별되는 자신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카라바지오가 구매수량을 변경할 수 있고 (혹은) 제조시설에 대한 주요 운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도 있다. 제조에 대한 계약상 약정은 많은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계약의 약정 시점에 사실과 상황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7.5 독점공급계약 – 자산의 식별



Background

고객 A는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의료 장비 및 일회용 품('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CM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MO에는 여러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생산 라인이 있으며, 이 계약을 통해 CMO는 고객 A의 주문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생산 라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CMO는 특정 제품 라인에서 제품 생산이 시작된 후에도 최소한의 이전 비용으로 다른 생산 라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CMO는 모든 생산 라인에서 여러 고객 주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 A는 분기별로 구속력 있는 구매 주문서를 CMO에 제출하며, 계약상 구속력 없는 연간 생산 계획을 제공한다. 제품은 일반적이고 쉽게 보관할 수 있으며, CMO는 생산에 사용할 재료 선택을 포함하여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IFRS 16 문단9].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IFRS 16 부록B 문단 B13].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 (1)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
- (2) 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다.

[IFRS 16 부록B 문단 B14]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가?



Solution

이 약정에는 IFRS 16에 따른 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산(즉, 생산 라인)의 사용이 계약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공급자인 CMO의 실질적인 대체 권리가 존재하므로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CMO가 계약 전반에 걸쳐 생산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산 라인의 대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운영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산출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7.6 독점공급계약 –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



Background

고객 B는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의료 장비 및 일회용 품('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CM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MO에는 여러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생산 라인이 있으며, 제품별 전용 생산 라인에 존재한다. 즉, CMO는 계약상 고객을 위해 다른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고객을 위해 이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 B가 CMO에 수시로 제출하는 구매주문서는 생산여부 및 시기,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객 B는 계약상 CMO에게 산출물 요구 사항에 대한 구속력 없는 연간 예측을 제공해야 한다. 제품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주요 운영 결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운영 절차의 변경 사항은 고객 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evant guidance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IFRS 16 문단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IFRS 16 부록B 문단 B9]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또는 고객이 결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다른 자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였다.

[IFRS 16 부록B 문단 B24(2)]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가?



Solution

이 약정에는 IFRS 16에 따른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 식별되는 자산(즉, 생산 라인)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급자는 실질적인 대체권을 갖지 않는다. 제품전용 생산 라인이 있으며, 고객 B의 구매 주문에 따라 전용 생산 라인에서 생산량, 시기,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고객 B는 생산 라인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통제한다. 또한 CMO는 고객 B의 사전 승인 없이 재료/구성 요소의 유형, 전체 생산 프로세스 및 기타 산출물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운영 지침을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CMO가 다른 고객을 위해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B는 생산 라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7.7 공급계약에 포함된 생산 라인 내재리스 – 고정된 최소 대가



Background

제약회사인 패딩턴은 CMO인 런던사와 의약품 제조 및 공급을 위해 2년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패딩턴은 공급 계약상 생산 라인에 대한 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Solution 7.6 참조). 패딩턴은 생산된 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해 런던사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에는 패딩턴이 계약상 구매해야 하는 의약품의 월별 최소 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지정된 수량은 계약 기간 동안 패딩턴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패딩턴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IFRS 16 문단 12].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IFRS 16 문단 13].

패딩턴은 IFRS 16에 따라 리스요소에 대한 리스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Solution

패딩턴은 2년 사용 기간 동안 최소 수량을 구매해야 하므로, 총 대가는 변동 가능하나 최소 구매 수량으로 인해 회피불가능한 고정 대가가 식별된다. 첫번째로, 패딩턴은 리스개시일의 리스 기초자산인 생산라인(리스요소)과 의약품(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고정대가를 배분해야 한다. 이후 패딩턴은 리스료로 배분된 금액의 현재 가치로 재무상태표에 리스부채(및 사용권자산)를 인식한다.

7.8 공급계약에 포함된 생산 라인 내재리스 – 변동대가



Background

제약회사인 패딩턴은 CMO인 런던사와 의약품 제조를 위해 2년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 패딩턴은 공급 계약상 생산 라인에 대한 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Solution 7.6 참조). 패딩턴은 생산된 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해 런던사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에는 패딩턴이 계약상 구매해야 하는 의약품의 월별 최소 수량을 명시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고정된 지급액은 없다. 패딩턴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Relevant guidance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FRS 16 문단 12].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IFRS 16 문단 13].

패딩턴은 IFRS 16에 따른 리스요소에 대한 리스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Solution

이 제조 계약에는 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대가는 100% 변동적이다. 변동대가는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계약의 개시일에는 리스부채가 인식되지 않는다. 패딩턴은 여전히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거래대가를 배분해야 하며, 대가의 배분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리스료로 인식하며,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비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은 재고·매출원가로 인식한다.

8

제약바이오 기업의 Deal 고려사항



8.1 제약바이오 산업의 M&A

(1)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내·외 M&A 현황

1)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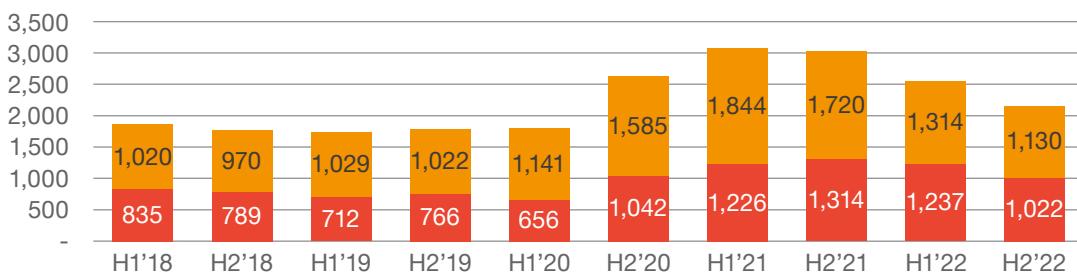
202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Healthcare) 산업 M&A 건수는 총 4,703건(-23% YoY), 금액은 총 2,990억 달러(-46%, YoY)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평균과 비교 시 M&A 건수는 32% 증가한 수치였으나, 금액은 24% 감소하였다.

2022년에 건수 대비 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22년 메가딜의 축소(2021년 20건 → 2022년 9건)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Healthcare) M&A 시장은 대규모 거래보다는 대형 기업이 전략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중소형 바이오텍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볼트온(Bolt-on)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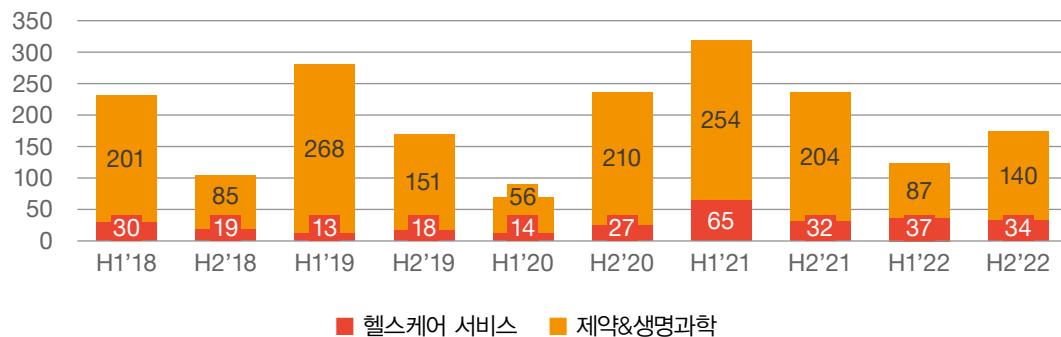
제약바이오(Healthcare) 하위 섹터는 제약&생명과학과 헬스케어 서비스로 구분되며, 제약&생명과학 대비 비중이 낮았던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M&A 금액 비중은 2018~2021년 4년 평균 13%에서 2022년 24%로 확대되었으며, 건수 비중 또한 42%에서 48%로 증가하였다. 이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는 원격의료, 디지털화, 컨슈머헬스(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부문의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제약바이오(Healthcare) 산업 M&A 현황

거래 건수 (단위: 건)



거래 금액 (단위: 십억 달러)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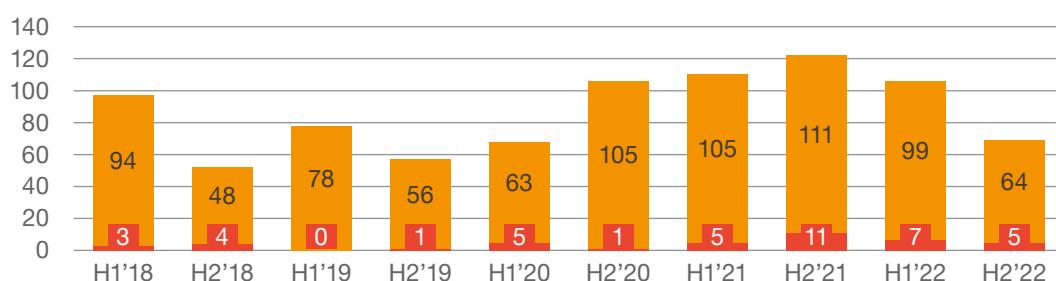
2022년 국내 제약바이오(Healthcare) 산업 M&A 건수는 총 175건(-25% YoY), 금액은 총 10조 5천억 원(+49% YoY)을 기록하였다. M&A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저조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대폭 개선된 실적을 시현하였다. 금액 기준 실적 개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약 2조 8천억 원) 등 대규모 딜 완료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약바이오(Healthcare) M&A 시장은 글로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중소형 딜과 국내 기업 간 Domestic M&A의 비중이 높으나, 규모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M&A 및 Outbound M&A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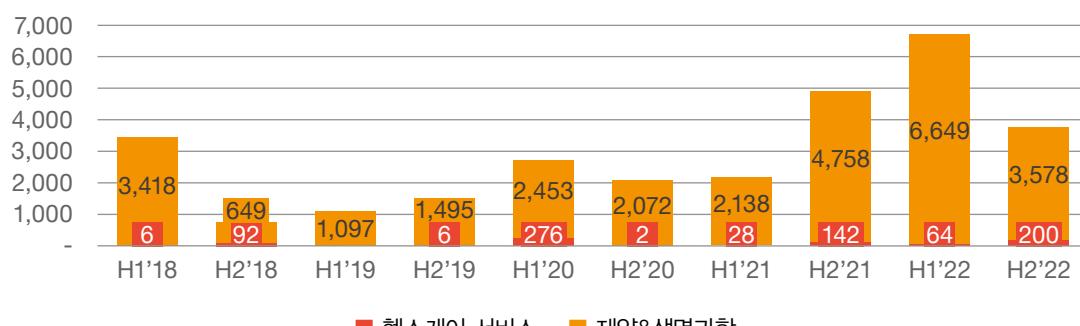
제약바이오(Healthcare) 하위 섹터로 구분하여 볼 때, 국내의 경우 글로벌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제약바이오(Healthcare) M&A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의 경우 M&A 건수 대비 48%, 금액 대비 24%였던 반면, 국내는 각각 7%, 3%에 불과. 글로벌 대비 국내 컨슈머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하여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투자 및 M&A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제약바이오(Healthcare) 산업 M&A 현황

거래 건수 (단위: 건)



거래 금액 (단위: 십억 원)



■ 헬스케어 서비스 ■ 제약&생명과학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M&A 사례

1) Global

Horizon Therapeutics PLC	거래일: 2022년 12월 인수자: Amgen Inc. 거래금액: \$27.8 Billion (\$116.5 per share)
	특이사항: Amgen社는 아일랜드 기반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Horizon Therapeutics社의 인수를 통해 Horizon Therapeutics社가 보유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Tepezza, 만성 통풍 치료제 Krystexxa,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Uplizna 등의 혁신 의약품으로 희 귀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고 시너지를 내고자 함. 인수에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본 인수가 갑상선 안병증 및 통풍 치료제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mgen社에서 자사 제품과 묶어 팔지 않기로 하는 등 합의를 통해 최종 인수가 마무리됨.
Abiomed, Inc.	거래일: 2022년 11월 인수자: Johnson & Johnson 거래금액: \$16.6 Billion (\$380 per share)
Biohaven Pharmaceutical Holding Company, Ltd.	거래일: 2022년 5월 인수자: Pfizer Inc. 거래금액: \$11.6 Billion (\$148.5 per share)
	특이사항: Pfizer社는 2021년 11월 Biohaven社의 지분 2.6%를 인수하고 미국 이외 시장의 'Rimegepant' 및 'Zavegepant'의 판권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전 세계 판권을 확보하고 5개의 전임상 CGRP(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포 트폴리오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여 파이프라인을 확장함. 'Rimegepant' 및 'Zavegepant'는 편두통 유발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CGRP 수용체 길항제 계열 약물로, Biohaven社는 'Rimegepant'를 구강붕해정으로 개발해 편두통 예방 및 치료제로 미 FDA의 승인을 받고 'Nurtec'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한 바 있으며, Pfizer社의 인수 후 비강분무형 편두통 치료제 'Zavegepant'가 FDA의 승인을 획득함. Biohaven社는 2013년 설립되어 신경질환과 희 귀질환 관련 약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온 기업임.

Seagen Inc.**거래일:** 2023년 3월**인수자:** Pfizer Inc.**거래금액:** \$43 Billion (\$229 per share)

특이사항: Pfizer社는 암 치료제 개발기업 Seagen社의 인수를 통해 Seagen社의 항체 약물접합체(ADC) 기술을 확보하고 항암제 분야에서의 Pfizer社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Seagen社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림프종 치료제 Adcetris를 비롯하여 Padcev, Tivdak, Tukysa 등 4개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반독점 거래 이슈에 대한 심사 중에 있으며, 최종 거래 종결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Prometheus Bioscience, Inc.**거래일:** 2023년 4월**인수자:** Merck & Co., Inc.**거래금액:** \$10.8 Billion (\$200 per share)

특이사항: Merck社는 생명공학 업체 Prometheus Bioscience社의 인수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 및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치료에 대한 강점을 갖게 되었으며 면역학 분야에서의 입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Prometheus Bioscience社가 최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자가면역 등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PRA023'에 대한 고무적인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였고, Merck社의 주력 제품인 면역항암제 'Keytruda'가 2028년 특허 만료되는 점 등이 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2) 국내**오스템임플란트(주)****거래일:** 2023년 1월**인수자:** MBK파트너스 및 UCK파트너스 컨소시엄**거래금액:** 1, 2차 공개매수 포함 2조 8,000억 원(추정)

특이사항: MBK파트너스 및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23년 1월 기준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일부 인수 후 1차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지분을 64.45%를 확보하였으며, 2차 공개매수 후 특별관계자 최규옥 회장 지분 등을 포함하여 지분을 96.1%를 확보한 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신청, 8월 중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됨. 지금 흥령 등의 이슈가 있었던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인수로 MBK파트너스는 앞서 인수한 메디트와의 시너지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삼성바이오에피스(주)	거래일: 2022년 1월 인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주) 거래금액: \$2.3 Billion
특이사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社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인수하며 100%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10년 간 바이오젠社와의 협업으로 축적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사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받음. 바이오젠社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15%의 지분을 투자하였고 2018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주)메디트	거래일: 2022년 12월 인수자: MBK파트너스 거래금액: 2조 4,250억 원
특이사항: MBK 파트너스는 글로벌 1위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인수한 후 MBK파트너스의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 및 중국 등 신규 시장에서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자 함. 유니슨캐피탈이 2019년 메디트의 지분 50%+1주를 3,200억 원에 인수한 후, 창업자 등 기존 구 주주 지분 포함 99.5%를 2조 4천억 원대에 다시 매각하게 됨에 따라 시장의 주목을 받음.	

휴젤(주)	거래일: 2021년 8월 인수자: GS 컨소시엄 거래금액: 1조 7,239억 원 (전환사채 포함)
특이사항: GS그룹, IMM인베스트먼트, CBC(C-Bridge Capital) Group, 중동 국부펀드 무다발라 등 4자 연합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는 휴젤의 기존 최대주주 LIDAC의 보유주식 43.24% 및 전환사채(전환가능 주식 수 포함 총 46.9%)를 약 1조 7,239억 원에 인수함. 인수 후 휴젤의 이사진에는 기존 대표이사 외에 CBC Group과 GS그룹의 임원이 참여하여 국내 보톡스 1위 기업 휴젤의 글로벌 메디컬에스테틱 선도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게 됨. 휴젤의 인수를 통해 GS그룹은 의료·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3) 2023년 제약바이오 산업 M&A 주요 테마

1) 제약&생명과학

- 글로벌 대형 제약업체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향후 10년 내에 만료될 예정으로, 파이프라인을 채우고 성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 제약업체들은 cross-border 딜을 포함한 다양한 M&A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 미국 내 반독점 규제로 인해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일부 메가 딜이 지연되어 딜 관계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며, 이에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M&A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형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매각 후보군을 검토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특허만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PE들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MedTech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인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최근 인플레이션, 고환율, 유동성 위축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바이오 기업은 임상 중단, 임상 지연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가치가 하락할 여지가 높으며, 낮아진 Valuation을 바탕으로 제약 및 일부 대기업들의 바이오 산업 인수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의 소비자화 추세의 지속으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및 식의약품 회사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으며, 새롭게 분리된 일반의약품 비즈니스와 소비자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M&A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 PE들은 인수 후 통합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자체 플랫폼을 키우고 비용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며, 여러 시장에 걸쳐 세분화되어 있는 개인 클리닉, 피부과, 안과, 수의학 및 기타 전문 의료 제공자 및 서비스 그룹은 계속해서 합병 추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의료 서비스 회사들은 M&A와 더불어 파트너십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상 비서와 챗봇과 같은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며, 원격의료, 헬스 테크, 애널리틱스 기업들은 특히 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는 중인 IT업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는 중이다.

8.2 제약바이오 산업 스타트업의 펀딩

(1)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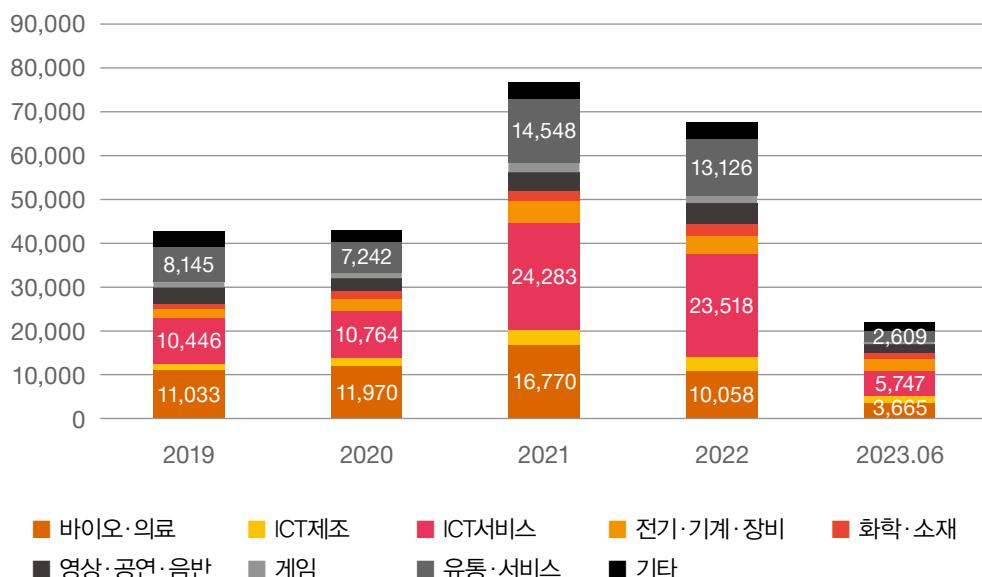
제약바이오 산업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같이 창업 초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실현 전까지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연구개발, 임상시험 진행, 수익 창출 모델 마련, 해외 진출 및 파이프라인 확대 등을 하게 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벤처캐피탈 시장의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 금액은 3,665억 원이며, ICT서비스에 이은 투자금액 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는 2021년에 1조 6,770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1조 1,058억 원(전년 대비 -34%)으로, 2023년 상반기 기준 3,665억 원(전년 동기 대비 -45%)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투자 호황기가 이어지다 2021년 코로나19의 효과로 투자금액이 특히 급증하였으나, 2022년 글로벌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전체 투자 금액이 감소하였고, 단기간 내 수익 실현에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IPO 시장도 얼어붙으며 상장 문턱이 높아지자 투자 라운드도 IPO에 가까워진 후기 라운드보다 초기 라운드로 집중되면서 총 투자액과 투자건수가 모두 축소되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스카이랩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메디픽셀 등의 신규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시장 분위기가 다시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단위: 억 원)



Sourc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주요 투자 사례

(주)프로티움사이언스

투자일: 2023년 3월

투자자: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

투자금액: 122억 원 (시리즈 A)

특이사항: 프로티움사이언스는 코스닥 상장 신약 개발기업 티움바이오의 종속회사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분석(CDAO) 전문기업으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세포주 개발부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상시험 신청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허가기관 보완요청 서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함. 2021년 5월 설립 후 약 1년 반 만에 150여 건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누적 수주액이 75억 원을 달성함.

(주)에스알파테라퓨틱스

투자일: 2023년 3월

투자자: L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투자금액: 110억 원 (시리즈 B)

특이사항: 에스알파테라퓨틱스는 디지털 치료기기(DTx) 개발 기업으로, 임상현장 경험이 있는 의사와 생화학자를 비롯한 BT 전문가와 개발자 중심의 IT 인력을 모아 DTx를 개발함. 소아근시를 적응증으로 하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확증임상을 진행 예정에 있으며, 항암 분야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에 있음. 또한, 미국 임상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지사 설립을 추진함.

(주)휴먼스케이프

투자일: 2023년 5월

투자자: (기존) GC녹십자홀딩스, 케어랩스, UTC인베스트먼트, (신규) 신한은행, 신한자산운용 등

투자금액: 200억 원 (시리즈 C)

특이사항: 휴먼스케이프는 2016년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로, 희귀난치질환 통합솔루션 '레어노트', 관찰연구용 임상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레어데이터', 임신·육아 솔루션 '마미톡'을 운영함. 시리즈 C 투자금을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및 수익성 확대를 가속화하고자 함. 2016년 설립 이후 시리즈 C까지 총 6차례 외부 자금을 조달 하였는데, 2020년 시리즈 B 라운드 당시 기업가치 330억 원을 인정받았으며, 2021년 카카오의 투자 당시 기업가치 750억 원, 시리즈 C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약 1,100억 원을 인정 받는 등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 투자일: 2023년 7월

투자자: (기존) K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신규)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신한벤처투자 등

투자금액: 200억 원 (시리즈 B)

특이사항: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자가면역질환 및 암질환에 대한 면역조절 항체 신약 개발 기업으로, 2020년 8월 설립 이후 3년 만에 누적 총 37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함. 시리즈 B 투자금을 이용하여 최근 미국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한 'OX40L-TNF' 이중 항체 'IMB-101(개발코드명)'의 임상 1상 수행과 차세대 IgM 플랫폼 기술인 'ePENDY 기술'을 활용한 면역항암제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임.

(주)스카이랩스 투자일: 2023년 9월

투자자: 한국산업은행,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데브시스터즈벤처스 등

투자금액: 207억 원 (시리즈 C)

특이사항: 스카이랩스는 반지 형태의 혈압 측정기 '카트 BP(CART BP)'를 개발한 기업으로, '카트 BP(CART BP)'는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함. 시간대별 혈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음주, 혈압약 복용 등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여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을 돋고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함. 스카이랩스에서는 대웅제약과 국내 판권 계약을 하며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해외 진출도 확대할 계획임.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이룬 케이스로 시장에서 평가됨.

(주)메디노 투자일: 2023년 10월

투자자: BNH인베스트먼트, CJ인베스트먼트, 티인베스트먼트, CKD창업투자 등

투자금액: 110억 원 (시리즈 C)

특이사항: 메디노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2018년 설립되어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졸중, 척수 손상, 유아 뇌졸중 치료에 효과가 있는 희귀 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핵심 파이프라인인 '하이스템(HIEstem)'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신생아 난치성 중추 신경계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투자금을 '하이스템(HIEstem)'의 글로벌 임상 2상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8.3 제약바이오 산업의 IPO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은 코스닥 또는 코넥스 상장 및 이미 상장되어 있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일정부분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신설하여 진입 요건을 다변화하였고, 이러한 개정으로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코스닥 시장 상장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스타트업 시장에도 상장바람이 부는 등 코스닥 진입이 수월해졌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스타트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기술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그 기술을 인정받아 상장하면서 전체 제약바이오 기업의 IPO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IPO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 들어 IPO를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IPO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상장 요건

1) 코스닥시장

-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2019.4.17 개정규정 기준)

구분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주식분산 (택일)	1. 소액주주 500명이고 전체 주식의 25% 이상, 청구 후 공모 주식이 5% 이상 (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 이상) 2.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주식이 10% 이상,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 주식이 25%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 원) 이상,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 원) 이상 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존재하며,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 원) 이상 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이상	1.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 최근 2사업 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2.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 원) 이상 3.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PBR 200% 4.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5.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	1.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2.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것 (외국기업의 경우 A등급 &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선임 의무 충족
기타 요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
질적 요건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 전문평가기관 22개 사 중 두 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기술평가 결과를 받아야 함

Source: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유니콘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의 일종으로, 유니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의 국내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2021년 4월 26일 신설한 제도로서, 시장평가 우수기업이 시가총액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간접 검증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술성 평가 절차를 완화한 제도이다.

기준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복수의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1개의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화되었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상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거나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하며,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코스닥시장 SPAC 합병상장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SPAC의 도입으로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소액으로 기업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SPAC의 합병상장 심사 시 '영업활동기간', '자기자본', '경영성과(수익성)', '감사의견', '주식양도제한', '합병대상법인 규모'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외에 기업경영의 계속성, 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상장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질적심사를 실시한다.

항목	심사 요건
이익규모	① 계속사업이익 20억 원 (벤처 10억 원) ② 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매출액 100억 원 (벤처 50억 원)
감사의견	최근 적정
주식양도제한	제한이 없을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 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합병대상법인 규모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SPAC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Source: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 상장요건

① 외형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주식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small>*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small>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② 질적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③ 기술특례상장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지원을 위하여 2015년 7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마련하였다.

- 외형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BB이상의 기술평가 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VC 등)의 상장 동의를 받은 기업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없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구분	내용	비고
투자유치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지정기관투자자)가 1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6개월 이상)	주1), 주2)
기술력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 (BB) 이상 기술등급 확보	주3)
투자자 동의	지정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 동의	

주1) 지정기관투자자('22.4월 현재 24사)

주2) 주식 이외에 주식관련사채권 투자 포함(잔존만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3)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기술전문평가기관 현황

기술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엔비, SCI평가정보
기술전문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질적요건 (공익·투자자보호 관련 부적격 사유 등)

지정자문인이 없는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여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 전반을 심사한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투명성을 토대로 공익과 투자자보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④ 크라우드 펀딩 특례상장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2016.11.7)에 따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조달에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한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하였다.

- 외형요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과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 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KSM(KRX Startup Market, 2016.11.14 개설) 시장 등록 전후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KSM 등록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형요건을 차등화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기업의 경우 외형 요건 중 펀딩규모 요건을 완화하였다.

구분	일반 크라우드펀딩기업	KSM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
펀딩규모	3억 원 이상 (주천기업: 1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주천기업: 0.75억 원 이상)
참여 투자자수	50인 이상 (전문투자자 2인 포함)	20인 이상 (전문투자자 2인 포함)

* KSM 등록 후 6개월 경과 및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요건 충족 기업

- 질적요건

지정자문인이 없는 크라우드 펀딩 특례상장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시와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지정 자문인을 대신하여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전반을 심사한다. 이 경우 신생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심사는 최소화하되 정기·수시공시 등의 공시업무 능력과 경영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게 된다.

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시장성 수익성 요건 이외 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성 있는 코넥스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을 개선하였다.

구분	공통요건	트랙 별 요건
Track 1		④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존재함 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⑥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Track 2		① (직전 사업연도) ROE 10%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 ROE 10%, 계속사업이익 20억 원 이상
Track 3		① 최근 사업연도 계속사업이익 20억 원 & ROE 20% 이상
Track 4	① 코넥스 상장 후 1년 경과 ② 지정자문인(상장주선인) 추천 ③ 기업경영의 건전성 충족	①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③ 영업이익 10억 원 이상
Track 5		① 소액주주 10% ②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자본금 초과 ③ 기준 시가총액 3,000억 원
Track 6		① 소액주주 20% 이상 ② 코넥스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억 원 이상 ④ 상장주선인이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
신속 합병 상장		① (최근 2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0억 원 이상 ② (최근 2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존재함

Source: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신규 상장 현황 (2023년)

회사명	상장일	상장유형	공모가 (원)	공모금액 (억 원)	업종	주요 제품
이노진	2023.02.20.	코스닥 이전상장	3,000	7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탈모케어제품, 피부케어제품
바이오인프라	2023.03.03.	코스닥 신규상장	21,000	136.5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생동성시험, 검체 분석
지아이아이노베이션	2023.03.30.	코스닥 신규상장	13,000	26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면역항암제 및 알레르기 치료제
노보믹스	2023.04.19.	코넥스 신규상장	—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위암 예후예측 진단키트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코스닥 신규상장	18,000	135	의약품 제조업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큐라켐	2023.05.18.	코넥스 신규상장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큐라티스	2023.06.15.	코스닥 신규상장	4,000	14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제조업, CMO/CDMO
프로테옴텍	2023.06.16.	코스닥 이전상장	4,500	72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알레르기 진단 제품
아이엠지티	2023.07.19.	코넥스 신규상장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치료용 집속초음파 기기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코스닥 신규상장	14,000	19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PHI-101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및 재발성난소암 치료제
에피바이오텍	2023.07.31.	코넥스 신규상장	—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탈모 치료제
큐리옥스바이오 시스템즈	2023.08.10.	코스닥 신규상장	13,000	182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세포 전처리 자동화기기 등
에스엘에스바이오	2023.10.20.	코스닥 이전상장	7,000	53.9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
유투바이오	2023.11.02.	코스닥 신규상장	4,400	49.7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의료IT솔루션
큐로셀	2023.11.09.	코스닥 신규상장	20,000	3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CAR-T 세포치료제
프로젠	2023.11.15.	코넥스 신규상장	—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바이오의약품

Source: KIND(한국거래소 전자공시)

8.4 제약바이오 산업의 Valuation

(1) 전통적인 Valuation 방법

기업가치 평가는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회사에 대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한다. 다만, 산출된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수행 시 적용되는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 모델	주요 개념
이익기준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현금흐름할인법(FCFF) • 주주현금흐름할인법(FCFE) • 배당할인법(DDM) • 초과이익모형(RIM) 	대상회사 또는 대상사업부가 보유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추정한 미래현금흐름, 배당, 초과이익 등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의 합계액
시장기준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EBITDA • EV/Revenue • PER(주가/주당순이익) • PSR(주가/주당매출액) • PBR(주가/주당장부가액) • 기타 지표(MAU, ARPU 등)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시가 배수(Trading Multiple) 또는 유사한 과거 거래 사례의 배수(Transaction Multiple)을 적용, 평가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가치창출요소 측면에서 적절한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
자산기준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순자산법 • 대체원가법/재생산원가법 • 청산가치접근법 	개별 자산·부채를 적절한 시장가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자산의 재생산 또는 재구축 비용을 산정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임

(2)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Valuation 방법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개발 시에 타 산업의 일반적인 신제품 개발과 달리 막대한 R&D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개발 과정을 거치며, 개발 과정에서 기초 및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등 많은 제약과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성공 확률이 낮은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할 경우 그 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평가에 필요한 대상회사의 과거 매출, 이익, 현금흐름 등의 대표적인 재무 지표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거나 그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성이 높으며,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시점 및 금액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업가치 또는 신약 파이프라인 등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법으로,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기대현재가치법 및 보정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마련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방법의 적용 사례로써 '초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 건을 소개하고 있다.

● 기대현재가치법

초기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익이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지 않고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시점과 그 금액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접근법이 아닌 시나리오 분석이나 마일스톤을 활용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이나 마일스톤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익점근법 중 하나인 기대현재가치기법이 있다. 이 방법은 측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예: 비교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과 충분한 자료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할 때 사용한다.

모든 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에 각각의 확률 가중치를 곱하여 기대 현금흐름을 구하고 이 기대현금흐름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의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모든 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률로 가중평균하므로 도출한 기대현금흐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현금흐름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현금흐름할인 방법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추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이 현금흐름할인 방법과 다른 점은 현금흐름의 발생 확률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 보정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더라도 가치평가기법은 현행 시장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보정이다.

보정은 비상장주식의 최초 거래 시점에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 거래가격과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후속 측정일에 그 시점의 시장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시장 조건을 반영하도록 투입변수를 조정하여 가치평가기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 최초 인식시점의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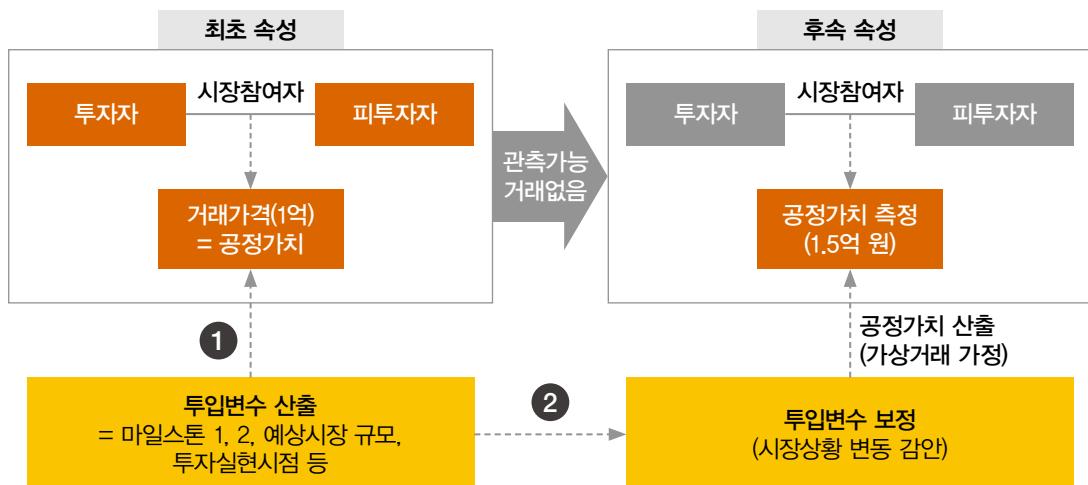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인 경우, 보정을 통해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측정 시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얻을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과 제반 가정들에 대하여 보정을 해야 하지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더라도 보정을 통해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 후속 측정일의 보정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라면 해당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후속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를 측정할 수 있다.

새로운 공정가치 평가기법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그 이후 측정일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후속 측정일에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는 직전 측정일과 해당 측정일 사이의 평가대상 기업의 변화나 그 기업이 속한 시장 상황, 경제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rNPV (risk adjusted Net Present Value) 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법론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도입하고 가공하여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rNPV 방법(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을 소개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개발비용, 개발기간, 임상성공률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고려한 위험 조정 순현재가치(rNPV, 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법을 이용하고 있다.

rNPV(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는 개발 기간 및 출시 이후 특허 만료 기간 까지의 연도별 현금흐름에 성공 확률을 적용한 값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변환한 ‘위험 조정 미래 예상 현금흐름’으로, 그 산식에 개발비용, 개발기간, 임상성공률 등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rNPV의 산식 및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다.

$$rNPV_{total} = LOA\ NPV_{rev.} - pro\ NPV_{dev.}$$

$$= \sum \frac{r_{LOA} CF_t}{(1+a)^t} - \sum \frac{Pro_{pt} C_{pt}}{(1+a)^{pt}}$$

* rLOA: 승인 가능성(Likelihood Of Approval), Pro_t: 각 개발단계별 진입가능성(Pro : Probability), CF_t: 출시이후의 현금흐름, C_{pt}: 각 개발단계별 개발비용, t: 특허만료까지의 기간, p_t: 각 개발 단계별 기간, a: 할인율(Discount Rate)

구분	내용
LOA NPV _{rev.}	<ul style="list-style-type: none"> $r_{LOA} NPV_{rev.}$는 출시 이후 수익의 현재가치로서, 약물의 시장 출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출 총액에 시장 출시 가능성(승인 가능성)을 곱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해당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값임 출시이후 수익의 rNPV값을 산출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에는 현금흐름, 승인 가능성, 특허만료까지의 기간, 할인율이 있음 출시 이후 현금흐름 산출을 위한 요소는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익률이 있으며, 이들은 약물이 타겟 하는 시장정보 및 해당 약물의 특성에 기초한 비교우위 분석, 동일한 약물군에 대한 제약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을 통해 추정이 가능함 승인 가능성은 현 개발단계부터 승인까지 각 단계별 성공확률의 총 곱으로 산출하며, 단계별 성공확률은 아래와 같은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실제 임상성공 사례분석을 통해 추산하는 방법이 있음. 평균 성공확률은 질환군별로 세부 분류가 가능하며, 1차적으로 추산된 성공확률에 기준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작용기전 및 효능 면에서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을 통해 최종 성공확률을 추산함 특허만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BT 제품의 시장 진출 이후 수익은 대상기술이나 물질이 가지는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이는 시장독점 기간이 기술이 특허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과 같음을 의미함
pro NPV _{dev.}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 NPV_{dev.}$는 개발 과정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로서, 각 개발 단계별 비용에 해당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가능성을 곱하여 할인율 값으로 할인한 총합임 진입가능성은 해당 개발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전 단계의 성공확률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음. 즉, 현재 약물의 개발단계가 임상 2상일 경우에는 전임상 과정과 임상 1상 과정이 성공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임상 2상의 진입가능성은 100%가 되며, 임상 3상의 진입가능성은 임상 2상의 성공확률과 같음

Sourc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Back-Solve 방법

신뢰성 있는 과거 재무정보 및 사업계획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초기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대상회사의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복합상품의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존재한다면 대상 상품의 기초자산인 지분가치를 미지수로 정의하여 복합상품 평가모형 내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역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Back-Solve 방법이라고 한다.

Back-Solve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행 및 거래사례의 가격 정보가 공정가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참고한 거래사례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중요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매우 적은 지분에 대한 거래는 평가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Back-Solve 방법으로 산출되는 지분가치는 동일한 거래가격과 상품정보를 반영하더라도 사용된 모형과 가정 및 투입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Back-Solve 적용 대상 상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모형과 가정, 투입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속 재측정 시, Back-Solve 방법에서 평가대상 상품구조의 변화가 없었다면 후속 재측정시에도 일관된 모형을 유지해야 하며, Back-Solve 방법을 통해 산출된 지분가치가 각 시점별로 합리적인 추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재측정 시점까지 경과기간이 장기이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재측정 시점 기준으로 내재 투입변수를 조정 반영하는 보정(Calibration) 절차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9

제약바이오 기업의 Tax 고려사항



9.1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개요

기업의 주체적인 기술 혁신과 국가의 미래 성장력 제고를 위해 2010년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1년 말에는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각 항목에 대한 문제율 및 해당 기술 등에 대한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1)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 화합물의약	1) (삭제, 2023. 8. 29.)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삭제, 2023. 8. 29.)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 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2023. 8. 29. 개정)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2023. 8. 29. 개정)

	<p>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하되, 국가전략기술 R&D 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은 제외한다],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2023. 8. 29. 개정)</p> <p>9) (삭제, 2023. 8. 29.)</p> <p>10) (삭제, 2023. 8. 29.)</p>
나. 의료기기· 헬스케어	<p>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p> <p>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p> <p>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 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기술</p> <p>7)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p>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p>1)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 [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 사용하거나, 가압·진공·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p> <p>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분석·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p>

	<p>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분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 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赖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p> <p>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p> <p>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약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p> <p>6)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p> <p>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p>
라. 바이오 화학	<p>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p> <p>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p> <p>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p>

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범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개발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 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한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3)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곱하는 세액공제율은 ‘가+나’로 구성된다.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이외 기업: 20%)

$$\text{나. MIN} \left(\frac{\text{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text{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times 3, 10\%(\text{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15\%) \right)$$

(3) 국가전략기술

1) 국가전략기술 범위

국가전략기술이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3. 백신	<p>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예방 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p> <p>나. 비임상시험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시험 기술</p> <p>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p> <p>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p> <p>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p> <p>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p> <p>사.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p>
7. 바이오 의약품	<p>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정제·충전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 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이용·개발하는 기술과 바이오 신약을 제조하는 기술</p> <p>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종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p>

다. 비임상시험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라.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한다. 이하 마목 및 바목에서 같다]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 기술
마.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 2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 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바.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 3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사.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기술
아.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범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개발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한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곱하는 세액공제율은 '가+나'로 구성된다.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중소기업: 40%, 이외 기업: 30%)

$$\text{나. MIN} \left(\frac{\text{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text{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times 3, 10\% \right)$$

(4) 구분경리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름

-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위 1)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름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text{자체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text{위 1) 외의 공통비용 } \times \frac{\text{(자체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 \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text{자체 일반연구개발 관련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text{위 1) 외의 공통비용 } \times \frac{\text{(자체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 \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text{자체 일반연구개발 관련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위 1) 외의 공통비용에서 ① 및 ②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5)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인정절차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실제 심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술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절차



9.2 M&A시 주주의 세무사항

(1) 지분 취득 시점의 세무사항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개요

지방세법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등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보는 사건을 통하여 취득하면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은 새롭게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지분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2) 과점주주의 개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중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3) 과세표준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세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취득세 2%에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어 합계 2.2%가 적용된다 (차량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취득세만 부과됨). 만약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의 중과세 대상 자산이 있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는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분 처분 시점의 세무사항 ① –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1)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법인주주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개인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이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개인주주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예정이다.

● 대주주의 정의

개인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 및 거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하며,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2024년부터 50억 원으로 개정 예정		

● 과세대상

대주주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외 양도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구분	상장주식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과세	과세
대주주 이외	비과세	과세	과세

2)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주식 발행법인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나,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주식의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세율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구분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외	10%	
중소기업 이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30%
		1년 이상 보유분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대주주 외	20%	
해외주식	중소기업	10%	
	그 밖의 주식	20%	

(2) 지분 처분 시점의 세무사항 ② –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법인주주 또는 개인주주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주권이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국내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것을 의미하며,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와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등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므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또는 상장법인 주식의 장외 양도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0.4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2021년~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장내양도	0.08%	0.05%	0.03%	0%
코넥스시장 장내양도	0.01%			
코스닥시장 장내양도	0.23%	0.2%	0.18%	0.15%
금융투자협회 내 양도				

9.3 개발비 세무조정 관련 유의사항

(1) 법인세

1) 개발비의 감가상각

법인세법은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개발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비를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때, 개발비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일반적인 감가상각대상 자산들과는 달리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개발비의 내용연수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비에 대한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다만, 법인이 위 감가상각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3) 법인세법상 개발비 관련 사례

법인세과-424(2011.06.24.)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 제품별로 하는 것임.(법규과-688, 2011.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2006.11.13.

【제목】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FPD 전공관 장비를 생산하는 첨단벤처기업으로 고가의 개발장비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성능을 입증 한뒤 수주를 받아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
- 개발에 투입된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개발비로 취득하고 있으며 판매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며 한번 개발된 장비의 매출실현가능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프로젝트별로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간 정액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로 상각하고 있으나, 향후 취득할 개발자산은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2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결정후 상각하고자 함.

(질의요지)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할 때, 이는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여부

〈갑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회사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연수로 향후에 발생하는 프로젝트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각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분명한데도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 처리 한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0인1804, 2020.09.08.

청구법인은 쟁점연구개발비를 당초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 감사를 통해 자산화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았는바, 자산화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나 잘못이 없는 이상 쟁점연구개발비를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만으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2020.04.07.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 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개발비의 평가 방법

특수관계인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반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상증세법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순자산가액 평가 시 차감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 금액이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당 평가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증세법상 개발비 관련 사례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 ② B/S상 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③ 자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비누계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④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가 산 항 목	차 감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 유상증자가액: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 연도말 B/S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비용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 이연법인세자산

(5) 부채가액에 가산 및 차감할 항목

가 산 항 목	차 감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일까지 가결산한 경우 당해소득에 대한 실제 납부할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토지급여추계액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준비금 및 모든 충당금(충당금 설정액 중 비용 확정분과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제외) • 이연법인세 부채 • 평가기준일 후에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

⑥ 법인이 신주주에게 증자전 임여금 유보액 등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당해 임여금 등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0원으로 한다.

대법원2022두50908, 2022.11.17.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10

Contacts



Assurance

서 용 범	박 성 훈	김 규 진
yongbeom.seo@pwc.com 02 3781 9110	sung-hoon_1.park@pwc.com 02 709 4786	kyujin.kim@pwc.com 02 709 8038
장 동 원	박 은 수	배 성 수
dong-won.jang@pwc.com 02 709 8973	eun-soo.park@pwc.com 02 3781 9482	seong-su.bae@pwc.com 02 3781 9626

Deals

이 도 신	이 현 주
do-shin.lee@pwc.com 02 709 3321	hyun-ju_2.lee@pwc.com 02 3781 9010

Tax

박 재 형인	김 대 성
jaehyung.park@pwc.com 02 3781 9981	dae-sung.kim@pwc.com 02 3781 9285

본 publication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택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서에서 IFR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부분 중 일부는 삼일회계법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IASB 또는 IFRIC의 발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서는 IFRS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적인 자문 또는 구체적인 실무적용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PwC, 삼일회계법인 및 동 조직의 구성원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본서의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소유이며,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형하여 또는 변형 없이 개인적인 용도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출처를 공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서는 IFRS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완전한 적용과 이해를 위해서는 IFRS 원문과 비교할 것을 권고합니다.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4A-RP-021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